

임된 사실과 국내 저술활동, 통일학술회의 개최활동이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검찰은 이 조문을 적용하여 기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거나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1998년 15명이 구속기소된 영남위원회 사건은 1심에서는 반국가단체 구성·가입 유죄 판결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반국가단체가 아닌 이적단체로 판정받았으나, 대법원은 그 중 3명을 제외한 12명에게 이적단체 구성·가입부분에 관해 무죄 판결을 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영남위원회가 반국가단체가 아닌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영남위원회가 직접적이고도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위 단체가 지향하는 합법당 건설, 노동자 정치조직 건설, 대중정치 선동의 지도노선에 따라 주체사상의 보급, 투쟁거점의 확보 등에 두고 있는 바, 이는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주체사상을 선전 전파하여 장차 북한이 지향하는 목적에 동조하여 국가를 변란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이고, … 그 자체로 폭력적 방법으로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국가변란을 직접적인 1차적 목적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목적수행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

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115조·제119조제1항·제147조·제148조·제164조 내지 제169조·제177조 내지 제180조·제192조 내지 제195조·제207조·제208조·제210조·제250조제1항·제252조·제253조·제333조 내지 제337조·제339조 또는 제34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통신·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핵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214조 내지 제217조·제257조 내지 제259조 또는 제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은닉·위조·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해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이나 그로부터 지령 받은 자가 외환죄, 간첩죄 등의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이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이나 그로부터 지령 받은 자가 형법에 규정된 55개 조항, 100여 종류의 범죄행위(외환관련죄, 살인관련죄, 간첩, 소요, 폭발물사용, 도주원조, 간수자 도주원조, 방화관련, 일수관련, 식용수관련죄, 통화위조 관련죄, 강도, 유기증권관련죄, 상해, 폭행 등)를 한 경우 중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를 선전·선동하거나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예비·음모만 해도 이 조문을 적용받게 된다.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그로부터 지령 받은 자'라는 규정은 북한 주민 등과 단순히 접촉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라는 규정 역시 그 적용범위가 상당히 넓다.

그런데 이 조항 중 제1항 제1호는 "형법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하여 이미 형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것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 이 법의 존재이유에 의문을 제기한다. 또한 일부 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처벌형량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 형법보다도 지나치게 높은 형을 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예컨대 기밀 간첩 행위인 가·목의 경우는 무조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게 되어있고, 유기징역형은 아예 규정되어있지 않다).

■ 적용례 이 조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원은, '국가 기밀'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여, "국민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적국에게 알려지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결국 국내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것이라도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자에게 알리기만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군사상의 기밀뿐만 아니라 ①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친 비군사적 내용, ②매스컴을 통하여 보도된 공지의 사실, 즉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하고 자명한 사실이라도 북한을 위한 유리한 자료라면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이 된다. 이른바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에서는 일반 서점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었던 「84 민중 언론 총목록」과 「야! 광주여 민

족의 십자가여』 등의 책자를 제공한 행위가 간첩 방조로 처벌받았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1997년 이 조문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고 헌법에 합치되도록 축소·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한정합헌 결정을 했다. 법원도 이러한 헌법재판소 견해를 원용하여 국가기밀의 개념을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무죄 판결한 사례가 있다. 가령, 1997년 범민련 남쪽본부 중앙위원인 강순정이 캐나다 본부 중앙위원에게 국내 정치상황, 새야운동단체의 활동, 재판과정 등을 써서 보낸 편지를 국가기밀 누설로 보고 항소심은 4년 6월의 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법원은 '국가기밀'을 무한정 넓게 해석하면서 일관성 없는 판결을 하였다. 불교인권위원회 활동보고서 등을 범민련 해외대표에게 보낸 진관 스님에게 국가 기밀 누설죄를 적용하는 등의 공안사건이 계속 발생하였다.

5. 자진지원 · 금품수수

제5조 [자진지원 · 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해설 제1항의 '자진지원'은 제4조(목적수행죄)에서 규정한 신분(반국가단체와 조직적인 연관을 가진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

되는 것으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들과 연락 없이 독자적으로 한 행위도 특별히 처벌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2항의 '금품수수'는 반국가단체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그 "정을 알고" 금품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이는 실질적으로 제4조(목적수행죄)에 규정된 각종 행위에 대한 예비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 적용례 법원이 '자진지원'으로 판단한 예로는 ① 반국가단체가 아닌 전민련 간부인 김현장이 전민련의 활동 상황 소식을 한통련(제일한국 민주통일연맹- 법원은 한통련이 종전에 북한 및 조총련의 지령에 따라 구성되었던 반국가단체 한민통과 실체에 있어서 아무런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반국가단체라고 판단하였다)에 발송한 것을 자진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한 사건, ② 문익환 목사를 수행하여 북한을 다녀온 유원호씨가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인용하여 "전민련은 분열된 재야가 하나의 단일기구로 조직된 것이고 40대가 주축이 되었으므로 앞으로 정당으로 확대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을 자진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한 사건, ③ 소설가 황석영이 방북 중 재야운동가들의 신원 정보와 운동권 동향, 남한의 핵무기 배치 발언 등을 자진 국가기밀 누설죄로 처벌한 사건 등이 있다.

그리고 '금품 수수'는 주로 잠입·탈출과 함께 문제되는 조항으로, ① 반국가단체가 된 한통련 (한국민주통일연합) 부의장에게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잠입한자가 그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이윤정 사건, ② 북한에서 소설『장길산』의 영화화와 관련된 출판문화사업을 위해 자금을 받은 것이 문제된 작가 황석영 사건, ③ 북한에 밀입북하였다가 거처를 읊기면서 짐을 싸기 위해 대남지도원으로부터 가방 1개를 건네받았던 것이 문제되어 기소되었으나 그 부분 무죄 판결을 받은 김천태 사건 등이 있다.

6. 잠입·탈출

제6조[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해설 이 조문은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을 드나든 것을 범죄로 규정한 것으로, 목적 없는 단순한 잠입탈출을 처벌하기 위한 제6조 1항(일반 잠입탈출)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6조 2항(특수 잠입·탈출)으로 나뉜다. 여기서 '잠입'은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것을 말하고, '탈출'은 출발장소 여하를 불문하고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북한으로 '출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써 실질적으로 북한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규정이다. 이는 결국 이 법의 반국가단체 규정이 북한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으로 들어가서 남한으로 나오는 것을 처벌함으로써 거의 대부분 잠입죄와 탈출죄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도록 되어있는 바, 실질적으로 이중처벌과 마찬가지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1958년 3차 개정 당시 신설될 때에는 원래 "북한의 공작원(간첩)의 국가기밀 팀지 수집이나 테러행위와 같은 적극적이고 외형적인 활동이 아

난, 지하당의 구축이나 사회질서의 혼란 조성과 같은 소극적이고 음성적인 활동을 처벌하기 위한 취지”에서 첨가되었다 한다. 그런데, 1980년대 후반부터 잠입·탈출 조항은 주로 남한 사람들 중 방북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적용되었다.

이전에는 제3항에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국외공산계열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 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로 제2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여 북한 외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왕래도 금지하였으나, 소련·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류가 시작되면서 1991년 제7차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 적용례 그 동안 문익환, 임수경, 박승희 등 통일운동 인사나 학생들이 방북한 행위가 대부분 특수 잠입·탈출로 처벌받았고, 2001년에는 북한에 가족을 만나러 갔다가 한국에 입국한 미국 시민권자 송학삼씨가 잠입·탈출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일이 있었으며, 만취한 상태에서 두만강을 건너 월북하였다가 15일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소설가 김하기씨가 탈출죄로 처벌받았다. 또한 2001년에는 남북교류협력법상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방북허가를 받고 민족통일대축전에 참여하기 위해 방북했던 김규철 범민련 부의장 등 범민련 간부 6명이, “방북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범민련 3자협의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나아가 법원은 “그 행위 주체가 내국인으로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자의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실지로 행사되는 지역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위와 제3국에서 거주하다가 반국가단체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 ‘탈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면서, 캐나다 국적의 동포를 처벌한 바 있다. 독일 국적을 가진 송두율 교수 역시 독일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행위에 ‘탈출’죄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대한민국 국민이든 외국인이든 북한을 방문하면 무조건 탈출죄가 적용된다.

7. 친양, 고무 등

제7조[친양, 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친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해설 이 조문은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고유한 처벌규정으로서, 역대 정권에 의해 반공주의의 선전무기로, 그리고 민주화세력에 대한 처벌 수단으로 빈번히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그만큼 남용에 의한 인권침해의 사례도 많은 조문으로 국가보안법 개폐가 논의될 때마다 뜨거운 쟁점이 되어 왔다.

이 조문은 ① 반국가단체를 친양, 고무하거나, ② 이른바 이적단체를 구성하는 행위, ③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행위, ④ 이른바 이적표현물

소지 등 행위 등을 처벌하고 있는 바, 이 규정들은 헌법상의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이 조문에 등장하는 찬양·고무행위, 이적단체, 이적표현물 등의 개념은 모호하기 짝이 없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로 인한 부당한 인권침해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사상의 자유·양심의 자유는 최대한의 보장을 하도록 하는 것이 헌법 원칙이므로, 이 조문은 삭제되더라도 국가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하등 영향이 없으며, 오히려 자유로운 사상이 보장되고 표현의 자유가 신장됨으로써 자유민주주의가 보다 발전할 수 있고 이념적으로 훨씬 건전한 사고를 배양할 수 있으므로 국가안전보장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문 각 항의 요건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찬양, 고무 등의 죄[제1항] 이 항의 행위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찬양, 고무, 선전, 동조 등 각각의 용어의 의미 하나하나가 모두 추상적, 포괄적이어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많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이들 행위 유형 하나하나의 의미를 명확히 구분하여 어느 행위가 어느 범죄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한다고 하더라도 이들 용어의 추상성과 포괄성 때문에 사실상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 등에 찬성하거나 이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찬양, 고무, 선전, 동조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구별 없이 이 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쉽사리 이 항의 적용을 확대하여 왔다.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의 죄[제3항] 이 항은 제7조 제1항의 행위를 목

적으로 하는 단체, 이른바 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이미 제7조 제1항에서 찬양, 고무 등의 행위가 범죄로 규정되어 있어, 이러한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 가입행위의 경우는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에 의해 충분히 처벌할 수 있으므로 이 항과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두 필요가 없다. 또한 이 항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 원칙에 반한다. 어떠한 단체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범죄는 아니다. 문제는 범죄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형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는 각 해당범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이 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고무 행위죄의 형보다 높은 법정형으로 처벌받도록 되어 있다. 이 항의 자의적인 적용에 의해 그간 많은 학생운동단체와 노동운동단체 등이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처벌되어 왔고,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받아 왔다.

허위사실 날조, 유포의 죄[제4항] 이 항의 입법취지는 이적단체의 활동 중 일정한 행위를 별도의 규정으로 처벌하는데 있다. 이미 국가보안법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하는 여러 가지 행위, 특히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4조 제1항 제6호). 그러므로 이 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그럼에도 이 죄를 별도로 정한 것은 권위주의 독재정권을 비판하는 반정부적 발언과 활동을 특별히 탄압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이다.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죄[제5항] 이 항은 위와 같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열거한 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 죄를 처벌한다. 무엇보다

도 이 항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제21조), 특히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각하게 제약하였다.

■ 적용례 우리 사법기관에 의한 그간의 적용사례들을 살펴보면, 제7조는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한 탄압 도구로서 남용된 대표적인 조문이다. 이 조문의 방대한 적용례 가운데 나타난 그 주요 사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찬양, 고무 등의 죄(제1행) 찬양, 고무 등을 인정하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장,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행위다. 법원은 특정의 주장이 북한의 주장(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연방제통일방안 등) 중 어느 하나와 일부라도 일치하거나, 어느 맥락에서든지 북한이나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가 좋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북한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찬양 혹은 고무라는 개념의 사전적 의미와도 다르게 해석·적용되어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방대한 적용사례 중 주요사례를 열거하였는바, 법원이 과거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 죄를 남용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 찬양, 고무 등 인정례

- 술자리에서 북한군기를 제창한 행위 (대법원 1969. 7. 29.선고 69도825)
- 술자리에서 절대부들에게 "나는 이북에 갔다 온 사람인데 이북은 있는 사람이 나 없는 사람이나 다 잘 시는 좋은 곳이다. 여기는 있는 사람만 잘 살고 없는 사람은 점점 더 못 산다. 그래서 남반부가 나쁘다. 이북에는 절대부가 없는데 같이 이북에 갈 수 없느냐"는 등의 발언을 한 경우 (대법원 1973. 3. 13.선고 73도166)
- 철도역장이 직원들에게 훈시를 하면서 "공산주의의 목적은 나쁘나 그 방법은 나쁘지 않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경우 (대법원 1973. 3. 13.선고 73도166)
- "김일성을 모르느냐. 김일성을 모르는 놈들은 모두 죽여 버려야 한다. 김일성

이 무엇을 잘못하였느냐" 등의 말을 고성으로 반복한 경우 (대법원 1977. 2. 8.선고 76도4303)

- 북한의 우표를 매수, 취득한 행위 (대법원 1978. 12. 13.선고 78도2243)
- 조총련의 군중대회에서 같이 동조하는 취지의 언사를 한 행위 (대법원 1979. 9. 11.선고 79도1678)
 - 시위 도중 성조기를 소각하고 반미내용의 유인물을 살포한 행위 (대법원 1983. 2. 8.선고 82도2655)
 - 책의 내용 중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부분을 발췌하여 발표, 토론한 경우 (대법원 1983. 2. 22.선고 82도2915)
 - 종교적 형식의 학습모임에서 계엄철폐, 정권타도 등의 의제를 가지고 토의한 행위 (대법원 1983. 3. 8.선고 82도3248)
 - 군부대 내에서 전우들에게 북한을 동경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경우 (대법원 1984. 11. 27.선고 84도2310)
 - 이른바 민족민주혁명론을 주장한 경우 (대법원 1986. 9. 9.선고 86도1187)
 - 문장 또는 발언 중의 일부분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 (대법원 1986. 9. 23.선고 86도1499)
 - 반상회를 마치고 담소 중 마을 사람들에게 북한이 전기가 풍부하다거나 양곡보관시설이 잘 되어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경우 (대법원 1986. 11. 25.선고 83도1718)
 - 아직성이 인정되는 유인물 또는 서적을 교재로 하여 소위 '세미나'를 한 행위 (대법원 1987. 4. 28.선고 87도434)
 - 대학축제행사 중 강연초청을 받고 대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미국은 혈맹과 우방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전형적인 외세의 대표적 징징이다"는 등 강연을 한 행위 (서울고등법원 1991. 1. 31.선고 90노3526)
 - 전민련 결성대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낭독하고 북한의 대남선전, 선동 등의 활동에 동조하여 그 활동을 이롭게 하거나 그 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의 유인물에 대하여도 박수를 치는 등 지지를 표명한 행위 (대법원 1991. 4. 26.선고 91도353)
 - 범민족대회에서 북한의 선전책동과 상당부분 같이 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채택한 행위 (대법원 1993. 1. 29.선고 90도450)
 - 반제반독점민중민주주의혁명론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들의 취지에 찬

성한 행위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1711)

- 북한의 선전, 선동 내용과 일치되는 유인물을 작성, 배포한 행위, 연방제통일방안 확정을 위하여 투쟁하자는 등의 통화내용이 녹취된 테이프를 방송한 행위 및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가보안법어기투쟁의 일환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인공기를 계양하는 행위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도1730)
- 재미한국청년연합이 미국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참석하여 구호 제창, 시위 등을 하고 강연을 들은 행위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1711)
- 반국가단체의 간부로부터, 변증법적 유물론에 따른 역사발전을 서술하면서 공산주의의 필연적 도래를 강조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계철학사"를 교재로 강의식 학습을 받은 경우 (광주지방법원 1995. 1. 18. 선고 94고단2987)
- 일부 언행에 찬양, 고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들어 있거나 북한의 일부 정책에 반대하는 견해가 나타났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찬양, 고무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158)
-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공동본부장으로서, 제5차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결성대회를 개최하고 그 참석자들에게 연방제 통일방안의 추진, 평화협정의 체결, 국가보안법 및 국가안전기획부법의 폐지, 재벌해체, 주한미군 철수, 미군기지 반환, 군비축소, 한미행정협정과 한미방위조약 등의 파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린 자료집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설명한 경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결성식에 참석하여 결성선언문, 결의문, 강령, 규약 등이 인쇄된 자료집을 읽어 보고 그 승인·채택에 찬성한 경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2606)

한편 이 죄의 주관적 요건과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이 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면서 금품수수 (제5조 제2항), 잡입, 탈출 (제6조 제1항), 찬양, 고무, 동조 (제7조 제1항), 회합, 통신 (제8조 제1항) 등의 경우,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수정되었다. 이러한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에 따른 것이나, 법 개정 이후에도 이 조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이적단체 구성 또는 기입의 죄(제3항) 관례에 의하면, 어느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그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추구할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이고 일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99도2317 외 다수). 이적단체에 대한 인정은 국가보안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의 목적 및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 역시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적용되면서 많은 피해사례를 양산했다.

▶ 이적단체인정례

-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김일성 주체사상 학습단체 (대법원 1986. 9. 23. 86도 1429)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내 반외세반독재민주화투쟁위원회 (대법원 1986. 10. 28. 86도1764)
- 전학련 민족민중민주투쟁위원회 (이른바 삼민투위) (대법원 1986. 10. 28. 86도 1784)
-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대법원 1991. 2. 8. 90도2607)
- 일꾼노동문제연구원 (대법원 1991. 4. 23. 91도212)
-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노동문학실 (대법원 1991. 12. 24. 91도2419)
-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 정책위원회 및 학생추진위원회 (대법원 1992. 8. 18. 92도1244)
-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대법원 1993. 9. 28. 93도1730)
- 재미 한국청년연합 (대법원 1993. 12. 24. 93도1711)
- 남한사회주의과학원 (대법원 1995. 5. 12. 94도1813)
-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동맹준비위원회 (대법원 1996. 5. 14. 96도561)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해외본부, 남측본부 및 그 준비위원회 (대법원 1994. 5. 24. 94도930)
- 노동자 정치활동센타 (대법원 1997. 6. 27. 96도1369)
-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대법원 1997. 7. 25. 97도1386)
-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법원 1998. 5. 15. 98도495 외 다수)
-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대법원 1999. 12. 28. 99도4027 외 다수)
- 울산대학교 혁신위원회 (대법원 2001. 2. 23. 99도5117)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죄[제5항] 이 항에 있어서는, 우선 표현물의 이적성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이 무엇이냐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한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1991.5.31. 국가보안법 개정 이전까지 법원은, 어느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객관적으로 이익이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추상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개연성”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310). ② 1991. 5.31. 국가보안법이 개정되어 제7조에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에 따라 법원은, 대한민국의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 있으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이적성을 갖는다는 다소 강화된 기준을 제시하였다(대법원 1992.3.31. 선고, 90도2033). 이러한 판결의 경향은 표현의 자유에 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엄격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상의 원칙에 반한다.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개정 이후의 적용례들을 살펴 볼 때 법원은 친북, 반자본주의적 요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으로 보아 처벌하였으므로 실제로는 과거의 기준에 비하여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

이적표현물에 관한 적용사례는 매우 많으나 대표적인 경향만을 지적한다면, 법원은 칼 마르크스(Karl Marx)의 「자본론」 등 이미 세계적으로 고전이 된 서적들을 포함한 다수의 학술서적을 이적표현물로 보아 그 출판, 소지 행위 등을 처벌하였고, 북한서적 「꽃피는 처녀」를 출판한 행위도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아 처벌하였다. 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내용이 있거나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내용의 논문들도 이적표현물로 보았다. 나아가 분단극복과 통일의 염원을 담은 홍성담씨의 「민족해방도」나 신학철씨의 「모내기」 등의 그림도 이적표현물로 인정하였다.

한편 법원은 이 죄의 주관적 요건인 ‘이적 목적’에 관하여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없고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전제 하에 이적표현물을 취득 소지 또는 제작 반포하는 행위가 있으면 이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행위자가 위와 같은 표현물을 소지하면 이적 목적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 까지 한다.

8. 회합, 통신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삭제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해설 이 조문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이는 우선 타인과의 의사소통이라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므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조항(제21조 등)을 심각하게 제약하는 문제를 갖고 있다. 또한 북한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남북간의 협력사업 등을 규정한 남북교류협력법 제17조 이하의 규정들과 정면으로 충돌되고, 극단적으로는 북한이 참가한 국제행사에 참석하여 북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행위, 남북가족 간에 서신교환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주고받는 행위 등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비록 이 조문이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두고 있다고는 하나,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사법기관의 자의적 법적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 문제점을 갖고 있다.

■ 적용례 법원은 학생운동단체와 통일운동단체가 통일운동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북한에 접촉하고 연락을 취한 사건들에 이 조문을 별다른 여과 없이 적용하여 왔다. 2002년의 경우 ① 1996년 북한의 대학교와 공동나무심기 행사를 하기 위하여 베를린 소재 범청학련 해외본부(공동사무국)를 통해 팩시밀리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이유로 대구경북 학생회총연합회 중앙집행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사람이 구속된 바 있으며, ②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은 2001년에 인터넷 전자메일,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범청학련 남측본부 중앙위원회 보고 내용 등이 담긴 문건을 범청학련 해외본부를 통해 범청학련 북측본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북측본부와 연락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었다.

9. 편의 제공

제9조[편의제공] ①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이 법 제3조 내지 제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

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해설 이 조문은 국가보안법 제3조 내지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에게 무기제공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 적용례 이 조문만으로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은데, 이는 이미 제3조 내지 제8조가 넓게 해석·운용되어온에 따라 굳이 이 조문만으로 기소, 처벌할 필요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조 내지 제8조에 규정된 범죄와 함께 이 조항상의 행위로도 기소되어 처벌된 예(예컨대 이적단체 가입으로 기소하면서 그 단체 구성원에 대한 편의제공 혐의도 함께 기소하는 등)는 적지 않다. 나아가 이 조문은 "기타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편의제공이라는 용어의 추상성은 구성요건 규정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0. 불고지(제10조)

제10조[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 한다), 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해설 이 조문은 국가보안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1, 3, 4항의 죄

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불고지죄 규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제19조)와 사회의 건전한 인륜도덕(본조 단서는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불고지자의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친족의 행위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행위도 원칙적으로 처벌하면서 다만 법원의 임의적인 형 감면만을 인정할 뿐이다)에 명백히 반하는 규정이다.

▣ 적용례 이 규정은 법원 및 수사기관에 의하여 빈번하고 폭넓게 사용되어 왔는바, 특히 과거에는 간첩사건이 발생하면 해당자의 주변 친척, 친구들은 이 조항에 의하여 다수 입건되어 처벌받았다. 1960년 제4차 개정 당시 신설된 불고지죄로 최초로 처벌받은 대표적 사건의 당사자는 바로 부산지검 정보부(공안부) 부장검사였던 한옥신이었다. 그는 이종사 촌간인 남파간첩 김종섭을 만났으나,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1989년에는 취재도중 서경원 의원의 방북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겨레신문 윤재경 기자가 구속되었다. 최근사건으로는 1995년 간첩 김동식의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그를 만나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우상호, 이인영, 함운경, 허인희 등이 불고지죄로 체포된 사례가 있다.

11. 처벌관련 기타 조항

- 특수직무유기(제11조) 이 조문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 형법상의 직무유기죄보다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사용된 예는 별로 없으나, 수사, 정보당국의 공무원들에게도 국가보안법 집행을 태만히 했을 경우, 보다 가중된 처벌이 따른다는 경고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조문은 인해 명백한 증거가 없음에도 과도하게 수사와 처벌을 강행하거나 고문·폭행과 자백

강요 등의 반인권적인 수사관행이 만연하는데 일조하였다.

- 무고·날조(제12조) 제1항은 국가보안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행위를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각조에 정한 형"이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이므로 일반적인 무고, 위증, 증거인멸 등의 죄보다 통상 형이 무겁다. 제2항은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이 위와 같이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행위를 한 경우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각조에 정한 형에 처벌하되, 법정형의 최하한을 2년으로 정하고 있다.

- 특수 기중(제13조) 죄를 범하고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으로서 형을 가중하게 되는데, 형법에서는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장기의 2배로 하여 가중한다(형법 제35조). 그런데, 이 조문은 이러한 일반 형법상의 누범의 요건과 가중 정도를 한층 강화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형법상 간첩죄,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등을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 내에 일정한 국가보안법위반죄를 다시 범한 때에는 그 죄의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 형법의 원칙에 비해 이례적인 형태의 누범기중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자격정지 형의 병과(제14조) 이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형기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선고할 수 있다. 이전에는 '병과한다'라고 하여 반드시 병과하게 되어 있었으나, 1991년 개정 당시 '병과할 수

있다'로 변경되었다. 여기서 자격정지 기간은 징역의 집행이 종료하거나 면제된 날부터 시작되며, 정지되는 자격은 공무원이 되는 자격, 공무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법인의 이사·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이다(형법 제43조 제1항).

- **몰수·추징(제15조)**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몰수하고,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일반적 수사 과정에서는 불기소할 때에는 압수물을 제출인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인데, 국가보안법에서는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폐기 또는 국고귀 속을 할 수 있다는 특칙을 두고 있다(제2항).

- **형의 감면(제16조)** 이 조문은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사람 중 형이 감경되는 경우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자수한 때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것은 일반 범죄와 동일하다(형법 52조 제1항). 제2호에서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라고 한 것은 국가보안법에만 있는 감면 사유이다. 제3호에는 “이 법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가 그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라는 감면 사유가 있었으나, 1991년 개정에서 삭제되었다.

- **타법적용의 배제(제17조)**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경우, 쟁의행위 중 현행범인 외에는 체포를 금지하고 있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특별 형사소송규정 (제18조~제20조)

제3장에 “특별형사소송규정”을 두고 참고인의 구인·유치(제18조), 구

속기간의 연장(제19조), 공소보류(제20조) 등 형사소송법에 대한 3개의 조문을 만들어 국가보안법 사범은 일반 형사 사범과는 다른 취급을 받도록 하고 있다.

- **참고인의 구인·유치(제18조)** 다른 범죄의 수사단계에서는 피의자와 달리 참고인에게는 수사기관 등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는 참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어, 이에 불응할 때에는 구인·유치까지 가능하다.

- **구속기간의 연장(제19조)** 원래 형사소송법상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이 최대 10일, 검사가 10일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만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1번 연장할 수 있어 최장 30일이 된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에는 이와 관련된 특칙이 있어, 사법경찰관도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검사의 경우에는 2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50일까지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공소보류(제20조)** 일반 범죄에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성향이나 죄질 등을 고려하여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제도가 있는 반면, 국가보안법에서는 별도로 ‘공소보류’ 제도를 두고 있다. 공소보류가 기소유예와 다른 점은, ① 그 자체가 종국처분의 일종으로, 같은 종류의 중대한 범죄가 재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취소되는 일이 거의 없는 기소유예와는 달리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고(제3항), ② 취소된 경우에는 기소유예와 달리 같은 범죄 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으며(제4항), ③ ‘공소보류자관찰규칙’을 제정하여 특별한 신고의 의무, 훈계를 받고 서약서를 제출할 의무 등을 부여하는 등 공소보류자들을 매우 불안한 지위에 처하게 한다는 점이다.

13. 보상과 원호(제21~제23조)

국가보안법 제4장에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 또는 체포한 자 등에 대한 보상과 원호 규정을 두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는 상금을 지급하고(제21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보로금을 지급하고(제22조), 신고·체포 등과 관련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유족과 같은 대우로 보상한다(제23조).

외국의 입법례

이른바 '선진' 외국에도 국가보안법 유사법률이 있음을 들어 국가보안법 존치근거로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그렇지만 단순히 독일, 대만, 미국 그리고 일본에 국가안전과 체제수호를 위한 국가보안법 유사법률이 있는가 여부가 아니라 관련 법률이 어떤 내용을 지니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 과연 그 법률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 어느 정도의 어떠한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가, 그래서 결국 헌법과 합치하는 법률인가를 각각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1. 독일

(1) 독일에는 국가보안법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법률이 전혀 없다. 다만 형법에 나치스정당의 활동금지를 거냥하여 헌법상의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를 방어하기 위한 몇 가지 조항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것도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판단한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다. 따라서 1956년 이래 위헌정당은 존재하지 않으며, 1968년 이래 공산당 활동은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다.

(2) 현재 독일형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선언한 정당 혹은 대체조직을 존속시키거나 관여한 자(제84조), 정당법에 의해 금지된 정당의 대체조직으로 확인된 정당·결사와 결사법(1964.8.5. 제정)에 의해 헌법질서나 국가간 이해증진에 반하기 때문에 금지된 결사·대체조직을 구성하거나 관여한 자(제85조), 제84조와 제85조에 해당하는 위헌정당·결사의 선전물을 반포한 자(제86조)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3) 1949년 서독의 헌법제정자들은 히틀러 집권 전의 바이마르헌법체제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파시스트독재자의 등장을 막지 못했음을 반성하며, '자유로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한 정당을 강제로 해산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후 헌법현실은 동서냉전의 골이 깊어지면서 동독과의 체제경쟁 때문에 파시즘은 물론 공산주의 정당활동까지 반헌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즉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 나치즘을 계승한 사회주의 국가당에 대하여 위헌정당으로 결정한 것은 납득할 만한 것이었지만, 1951년 정부가 제소하여 1956년 위헌정당으로 결정한 독일공산당 사건은 제도의 본래적 의미를 벗어난 것이었다.

이것은 당시 사회주의정당의 활동을 허용하던 다른 서유럽국가들과 비교되는 것이었고, 독일의 정치현실과도 거리가 먼 것이었다. 독일의 공산주의자들은 히틀러체제 아래에서 나치즘에 굴복하지 않고 민주주의 편에서 끝까지 저항했기 때문에 도덕적 정당성을 인정받아 1947년 말과 1948년 초까지 서방점령지구의 주(란트)연립정권에 참가할 정도였기 때문이다.

(4) 한편 1951년 공산주의자에 대한 탄압을 목표로 한 형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 국가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의 소지 자체를 처벌하는 제93조 제1항 제2호, 둘째 '국가기밀'을 "다른 정부에 대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의 안녕에 필요한 기밀"이라고 정의한 제99조, 셋째, '국가위태죄' 규정, 넷째 "연방공화국 또는 헌법적 질서를 집회·문서·회화로 비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96조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항들은 나치스형법(1934.4.24.)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맑스주의 학설 자체를 재판의 대상으로 삼고 그 기본내용인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지배를 헌법위반으로 판시함으로써 맑스주의 사상 자체나 맑스주의에 대한 연구를 범죄시하였다.

1968년 독일공산당은 다시 재건되었다. 그리고 1987.4.1. 개정된 형법에서 1951년 개정형법의 독소조항들은 사라졌다.

(5) 독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거의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독일 형법상 일부 조항을 가지고 일반 형법과 별도의 법률로 존재하는 한국의 국가보안법을 단순히 비교할 수는 없다.

첫째, 과거 서독에서도 모든 법규범은 서독 내에서의 행위에 대한 것이었지 동독 자체를 불법시하지 않았다. 서독기본법이 그 적용범위를 서독 내로 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법도 "이 법의 지역적 적용범위 내에서"라는 표현을 부가하고 있었다.

둘째, 독일의 관련법규들은 파시스트체제에 대한 역사적 경험 때문에 등장한 것으로서 한때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반전체주의에 한정된 것이다. 이 경우에도 히틀러의 『나의 투쟁』 출판을 허용하는 것을 보면, 법규범을 제한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독일에서는 공산당 활동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폭력적인 파괴활동 자체만을 문제삼을 뿐 정치이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비폭력적 수단으로 그것을 선전·선동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한다. 형법 제86조의 선전물에서는 국민계몽, 학문연구, 학설, 역사서술 등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 있다.

넷째, 형법규정의 전제가 되는 위헌정당에 대한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엄정하게 심사되고 있다. 아울러 독일의 헌법학자들은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가 '자유로운 정치활동의 기본권'으로서의 표현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음을 지적하거나 '반민주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혹평하기도 하고 정당에 대한 가치판단은 사법부가 아닌 선거민의 정치적 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자체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의 형법조항들은 현재 위헌정당강제해산제도 자체가 유명 무실한 상황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 그 결과 오늘날 독일에서는 옛 동독의 집권당인 독일통일사회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이 새로운 사회주의를 지향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이 정당활동을 하고 있다.

2 대만

(1) 대만에도 국가보안법에 해당하거나 그와 유사한 법률이 전혀 없다. 대만이 세계 최강의 사회주의 국가 중국과 대치하고 있으면서 그리고 오랫동안 계엄상태에서 일당집권체제 아래 있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사실이다. 다만 명칭만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국가안전법」이 있을 뿐, 그 내용은 국가보안법과 전혀 관계가 없다. 모두 10개 조항인 이 법의 핵심내용은 '공공집회와 결사의 제한'(제2조), '출입국 신청과 검사'(제3조, 제4조), '통제구역 지정'(제5조) 등이다. 그 중 처벌조항은 제4조와 제5조에 대해서만 두고 있다(제6조, 제7조). 제2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행령이 있지만, 이 역시 '14일 전 시위와 집회 신청', '공공건물 근처에서 집회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

(2) 대만은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구성을 하던 두 개의 조례를 1991.5.16. 폐지함과 아울러 「국가안전법」을 개정하여 인권보장의 수준을 한 단계 높였다. 그에 따라 1995년 제정된 「계엄시기인민수손권리회복조례」(戒嚴時期人民受損權利回復條例: 계엄 시기에 인민이 받은 권리침해의 회복을 위한 조례)는 위 두 조례와 계엄법에 의해 처벌받은 사람들에게 재산 환급, 자격 회복, 손해배상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더욱이 1990년 이후 대만에는 정치범 혹은 양심 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만의 국가안전법이 국가보안법의 정당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비교대상이 아님은 분명하다.

(3) 1949년 중국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한 장개석 정권이 본토에서 대만으로 옮겨온 이래 38년 동안 대만은 계엄 아래에 있었다(1987.7.14 해제). 그 과정에서 「국가안전법」, 「정치반란조례」(懲治反亂條例: 반란자 처벌을 위한 조례)와 「감란시기검숙비첩조례」(戡亂時期檢肅匪諜條例: 반란진압시기 공비숙청을 위한 조례) 등이 국가보안법과 유사한 구성을 하였다.

계엄이 해제되기 직전인 1987.6.23. 신국가안전법(7.1. 공포, 7.15. 시행)이 통과되었다. 10개조로 구성된 이 법률은 구국가안전법보다 다소 완화 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국가안전법의 입법목적(제1조)은 공산주의의 반란시 국가안전을 지키고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 대표적인 수단이 인민집회·결사의 제한(제2조)이다. 즉 "인민의 집회·결사는 헌법을 위배하거나 공산주의를 주장하거나 혹은 국토분열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이 조항은 선언적인 금지만 규정되어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따로 없다.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상징적 제한규정임을 쉽게 알 수 있다.

(4) 정치반란조례(1949.6.21. 공포)는 형법상 반란죄를 저지른 자를 가중 처벌함은 물론 그 동조자(군수품 지원, 물자 제공, 반란자 은닉 등)까지 처벌하는 법률이었다. 여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죄)를 연상케 하는 조문도 포함되어 있다. 즉, "반란자의 지령을 받거나 혹은 반란자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방화하거나 파업 등을 선동하거나 치안을 교란하거나 금융을 교란시키는 자(제4조 제8, 9, 10항)를 처벌하는 조항이 그것이다. 또 "유언비어 혹은 사실이 아닌 소식을 유포하여, 치안을 방해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킨 자"(제6조)와 "문자, 그림, 연설로서, 반란에 유리한 선전을 한 자"(제7조)도 처벌하였다.

감란시기검숙비첩조례는 정치반란조례의 집행법에 해당한다. 이 법에

는 반란자임을 알고서도 고지하지 않거나 방임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제9조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에 상당)을 담고 있었다. 여기에서 감란시기는 공비평정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토수복까지의 시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두 조례는 1991년에 폐지되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3. 미국

(1) 미국에도 국가보안법에 해당하거나 유사한 법률이 전혀 없다. 일부 법전에 남아 있는 조항들은 법체계의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것이어서 해당 법조항들은 사실상 무효이다. 왜냐하면 이 조항들은 연방대법원에 의해 위헌판결을 받은 것이어서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이 법조항은 적용불능 상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비교적 엄격한 삼권분립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이 입법무효로 이어지지 않으며 집행기관과 사법 기관이 해당 법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정도에 그친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법조항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형식적인 차이일 뿐 실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것이다.

(2)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사상통제법의 대부분은 폐지되거나 사실상 효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파괴활동금지법은 형식적으로는 「미연방법령집(United States Code)」에 실려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적용불능상태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사문화되었다. 국내안전법 또한 1967년 연방대법원의 위헌판결로 사실상 사문화하였으며, 파괴활동통제에 관한 조항은 1968년 비상구금에 관한 조항은 1973년에 각각 의회 입법으로 대부분 폐지되고 극히 일부 조항만이 남아 있다. 공산주의통제법도 “누구든지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의 간첩·방첩·태업·전술을 인지했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임무를 받았거나 하는 경우 소정의 방식으

로 미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정도이다(§851). 그러나 이 법에서도 사상통제에 관한 조항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3)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사상통제법은 「파괴활동금지법(Act to Prohibit Certain Subversive Activities)」이다. 이 법은 1940.6. 연방의회를 통과한 「외국인등록법(Alien and Registration Act)」 중 일부를 가리키는데, 흔히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스미스법으로 부른다. 외국인등록법의 일부임에도 내국인에게도 적용되었다.

스미스법이 처벌하는 행위는 파괴활동의 선전선동 및 파괴활동단체의 조직행위이다. 그 주요 내용은 ‘합중국의 주·연방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파괴하는 것을 지지·선전·선동’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선전물을 ‘인쇄·발행·배포·공연히 전시’하는 행위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조직 행위를 돋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 모든 행위의 미수와 예비·음모 또한 처벌 대상이다.

(4) 1950.9.23.에는 「맥카렌법」으로 부르는 「국내안전법(Internal Security Act)」이 제정되었다. 이를 「파괴활동통제법(Subversive Activities Control Act of 1950)」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법은 ‘제1장 파괴활동통제’와 ‘제2장 비상구금’이 핵심내용을 구성한다. 전자는 공산주의 단체와 그 구성원의 등록의무를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비상사태 선포시 간첩 또는 태업행위자를 비상구금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 1954년에는 「공산주의자 통제법(Communist Control Act of 1954)」이 제정되었다.

한편 여러 주에서는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는 교사나 공무원들을 해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공산당 가입 전력이 있거나 그에 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이들을 해고시키곤 하였다. 「미시간 공산주의자 통제법(Michigan Communist Control Law)」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렇지만 연방대법원은 1952년 이러한 해고를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5) 더욱이 연방대법원은 1951년 파괴활동금지법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렸지만(Dennis v. US), 1956년 에이츠 판결에서는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을 계기로 파괴활동금지법은 사실상 폐지되었다. 선판례구속의 원칙에 따라 이 판결 이후에 모든 법원은 이 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이츠 판결은 우선 파괴활동금지법상 파괴활동단체의 '조직' 행위는 1945년 미국공산당 재창당으로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공소시효 3년을 적용하면 1948년까지의 조직활동만을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는 엄격한 해석을 채택했다. 둘째로, 파괴활동금지법상 '정부의 폭력적 전복을 선전 또는 선동'한다는 규정은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도록 선동하는 것을 의미할 뿐 '언젠가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판결을 계기로 판결 당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던 100여 명의 공산당 중간간부들이 대부분 석방되었다.

4. 일본

(1) 일본에는 국가보안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그와 다소 유사한 법으로 「파괴활동방지법」이 있다. 그런데 법의 명칭에서 보이듯 이 법은 반체제 활동 중에서도 사상·이념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체제를 부정하는 파괴활동으로 나아갈 때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범위가 판이하게 다르다.

더욱이 이 법은 정치범죄의 규제법으로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제정 이후 1990년대까지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고작 8건이 기소될 정도로 거의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8건 중 4건을 차지하는 문서반포죄에 대하여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할 정도로 법의 적용에 엄격함을 견지해왔다.

(2) 일본의 파괴활동방지법은 한국의 국가보안법과 마찬가지로 제정

당시부터 법학자와 변호사들로부터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로 비판을 받으면서 끊임없이 폐지론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변호사연합회는 1999.12 옴진리교 사건과 관련한 의견서에서 이 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폐지론을 제기하였다.

첫째,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의 개념이 매우 광범위하고 명확성이 없으며, 문서반포 등의 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둘째, 단체에 대한 규제는 위험의 개연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건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에 반한다.

일본 안보관련법제를 비교·검토하면 우리의 국가보안법 존치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파괴활동방지법」(1952.7.21. 법률 제240호)은 미군정이 종료되면 필연적으로 새로운 반체제적 공격행위를 불러옴과 동시에 치안기구의 약체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반체제적 단체의 불법적인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규제한다는 취지로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미국의 맥카렌법을 근간으로 하여 치안유지법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일부 계승하였다.

"이 법률은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에 대한 필요한 규제조치를 정함과 동시에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관한 형벌 규정을 정비"(제1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은 내란죄나 외환죄는 물론 그 교사·선동·문서반포·통신활동 등과 정치상의 주의·시책을 추진·지지하거나 이것에 반대할 목적의 소란·방화·기차전복·살인·강도 등의 행위를 포함한다(제4조 제1항).

공안심사위원회는 제1조에 해당하는 단체가 계속 혹은 반복하여 제4조 제1항의 파괴활동을 하거나 장래에 파괴활동을 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집단시위운동·집단행진·공개집회, 기관지 인쇄·반포, 특정의 종사자·구성원의 단체활동 등을 금지하는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처분은 필요하고 상당한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제5조 제1항). 또 한 단체를 해산시킬 수도 있다(제7조).

물론 파괴활동방지법이 완전히 사문화한 것은 아니다. 1996.7.11. 공안청장관이 파괴활동방지법에 근거하여 공안심사위원회에 지하철독가스 사건을 일으킨 '옴진리교'의 해산을 청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법률가의 80% 이상이 법의 적용에 반대하였으며, 위원회 역시 1997.1.31. 이를 기각하였다.

결론

국가보안법은 분단과 전쟁의 혼돈 속에서 한시법의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 그리고 지금,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서 제정 당시보다 훨씬 무거운 갑옷을 입고 반공주의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하지만, 탈냉전과 민주주의 시대를 맞아 점차 그 칼날은 무뎌지고 갑옷은 누더기가 되어가고 있다. 곧 국가보안법은 민의(民意)의 요구에 의해 마지막 숨을 헐떡이게 될 것이다.

지난 56년간 국가보안법 존립의 명목은 소위 '안보현실'이었다. 그런데, 실제로 국가보안법은 남북과 남남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불씨이자 정권안보를 위한 탄압기제의 역할을 하면서, 그 위용을 스스로 갉아먹어왔다. 그러므로 그동안 국가보안법이 정권안보를 위해 이용당했고, 오남용으로 인권유린의 족적을 남기기는 했으나, 국가안보를 위해 여전히 '필요악'이라는 주장은 이미 설득력을 잃어버렸다. 더욱이 국가보안법이 이제 반공주의보다 더 협소한 반북주의에 기대어 자신의 목숨을 연명하고자 하므로, 처지는 더욱 궁색해지고 있다. 본격적인 민족화해협력과 민주주의의 시대를 맞아, 설 자리를 점차 잊어가고 있다.

지금은 지난 56년간 미루어왔던 숙제를 끝낼 수 있는 초기다. 국가보안법을 금과옥조로 받들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 십분 활용했던 과거 집권세력과 보수언론마저 강력한 폐지 여론에 대응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개정에 동조하거나 대체입법안에 기웃거리고 있다. 그들은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라 주장하며 안보를 빌미로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심어주면서, 이미 뇌사상태인 국가보안법의 목숨을 연장하려 한다.

110 「국가보안법 폐지 해설서」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아무리 손질해도, 설령 개명한다고 하더라도 참혹한 과거의 기억을 덮을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은 냉전과 분단, 그리고 독재의 산물로 이제 과거청산의 대상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탈냉전의 시대에 냉전의 잔재를 청산하고 분단을 넘어 통일로 나아가는데 시금석이 될 것이다. 또한 독재의 긴 터널을 지난 지금, 실질적으로 이념과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 도약의 발판이 될 것이다. 미래를 위한 유일한 선택은 국가보안법 폐지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가 국가보안법의 덫에 갇혀 희망을 잃게 할 수는 없다.

국가보안법의 폐지! 제17대 국회가 '제2의 제헌국회'를 꿈꾼다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역사적 과업이다. 제17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산고를 겪으며 국민들의 '선거혁명'을 통해 탄생했다. 그들이 진정 오점투성이로 점철된 과거 국회와의 단절을 선언하고 제2의 제헌국회로 거듭나고자 한다면, 1948년 12월 1일 제헌국회가 잘못 끼운 첫단추, 국가보안법부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부 록

/주요 통계

/학문 언론 예술 표현의 자유 관련 대표적 적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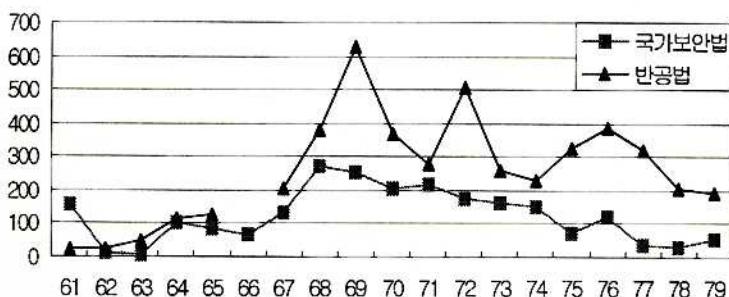
/대표적인 이적표현물 목록

주요 통계

1. 구속 및 기소인원 관련 통계

▶ 1960~1979년

■ 제1심 형사 공판사건 - 접수(기소인원) ¹⁾																			
연도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국가보안법	156	15	9	100	86	69	131	270	254	204	217	175	16	152	74	121	35	30	57
반공법	26	23	48	112	124	-	207	381	627	368	276	507	26	228	328	386	322	208	1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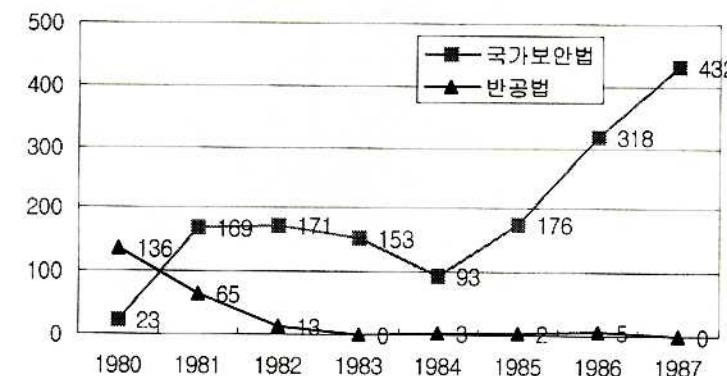


1) 자료출처 : 1961년~1970년 통계, 법원행정처, <법원통계연보 1970> / 1971년 이후 자료 통계,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 1980~1987년

■ 제1심 형사공판사건 - 접수(국가보안법 · 반공법 기소인원)²⁾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총계
국가보안법	23	169	171	153	93	176	318	432	1,535
반공법	136	65	13	-	3	2	5	-	224
계	159	234	184	153	96	178	323	432	1,759



2) 자료출처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1~1993. 1980년 반공법이 폐지되었음에도, 1980년 이후 반공법 위반자가 발생한 것은 6차 개정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폐지법률)에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 1980~1987 국가보안법 각 조항별 입건자·구속자수³⁾

	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계	2,232	167	270	234	121	106	127	527	489
(입건/구속)	1,565	116	116	166	108	94	101	365	302
반국가단체	38		19	1	1			17	
구성·가입	8		5	1	1			1	
침입·탈출	39	3	7	11	7	2	2	7	
	29	2	4	6	6	2	2	7	
찬양·고무	2,072	148	225	201	106	2	2	7	
	1,495	110	151	153	96	2	2	7	
회합·통신	9	1			3	2	2	1	
	7	1			2	2	1	1	
편의제공	14		2	8			3		
	3			1			1		
불고지	42	13	12	11		2	4		
	8	1	1	4		1	1		
무고	12	1	2		4	3	1		1
	11	1	2		3	3	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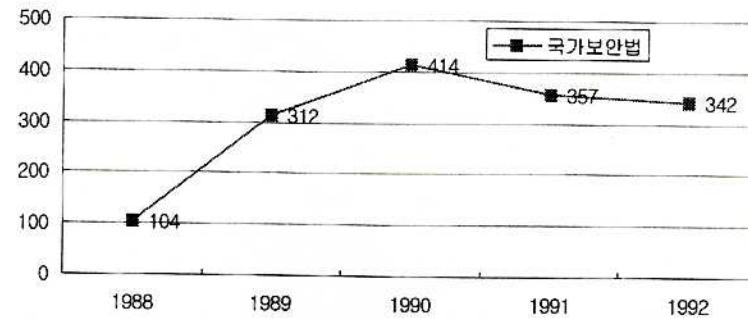
▶ 1988~1992년

■ 제1심 형사공판사건 - 접수(국가보안법·반공법 기소인원)⁴⁾

연도	1988	1989	1990	1991	1992	계
국가보안법	104	312	414	357	342	1,529
계	104	312	414	357	342	1,529

3) 내무부, 1988 10월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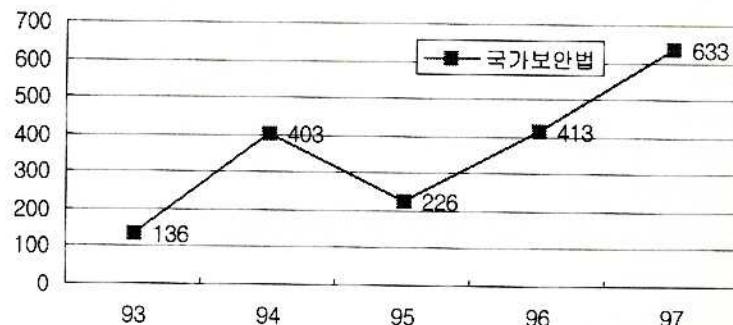
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3년~1997년.



▶ 김영삼 정부

■ 제1심 형사공판사건누년비교-접수(국가보안법 기소인원)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계
기소인원	136	403	226	413	633	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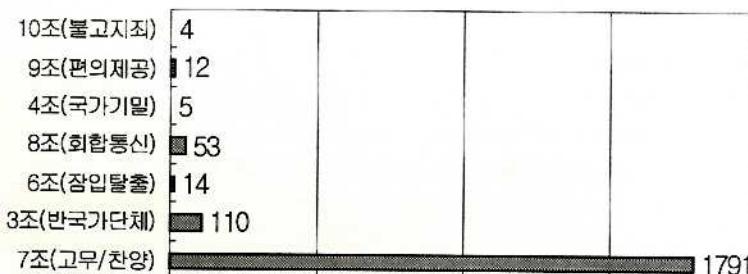


■ 김영삼 정권 5년동안 연도별 국가보안법 구속자 현황⁵⁾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총
구속인원	112	393	285	499	677	23	1,989

■ 적용법조별 현황⁶⁾

법조별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계
7조(고무·찬양)	69	339	244	450	666	23	1,791
3조(반국가단체)	30	24	28	28	-		110
6조(잠입탈출)	4	.	4	3	3		14
8조(회합통신)	8	23	4	15	3		53
4조(국가기밀)	1	2	1	1	-		5
9조(편의제공)	.	5	-	2	5		12
10조(불고지죄)	.		4				4
계	112	393	285	499	677	23	1,989



5) 민기협 조사통계,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 1993.2.25.~1998.2.24. 통계임.

6) 민기협 조사통계,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 1993.2.25.~1998.2.24. 통계임.

■ 신분별 현황⁷⁾

연도 직업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합 계
학생	31	193	102	318	500	15	1,159
노동자	5	38	20	38	44		145
재야	63	128	110	92	89	8	490
군인	13	34	53	51	44		195
계	112	393	285	499	677	23	1,989

■ 90년 이후 공안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율, 1심 실형율⁸⁾

연도별	구속영장 신청인원	구속영장 기각인원	구속영장 기각율(%)	기소인원	실형인원	실형율(%)
1990	600	23	3.8	860	269	31.2
1991	637	18	2.8	902	356	39.4
1992	244	2	0.8	565	174	30.7
1993	247	3	1.21	243	97	39.9
1994	516	7	1.3	533	99	18.5
1995	381	24	6.2	361	76	21.0
1996 (1.1.~8.31)	337	20	5.9	291	49	16.8

■ 1995년 국가보안법 범조항별 분류⁹⁾

구분	계	반국가·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찬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계	285	206	71	8
구속	243	184(75.7%)	53(21.8%)	6
불구속	31	19	11	1
이첩	11	3	7	1

7) 민기협 조사통계, 1993.2.25.~1998.2.24. 통계임.

8) 대법원 제출자료, 1996년 국정감사

9) 1996년 국정감사(내무위) 제출자료. 아래 1996년 통계도 동일함.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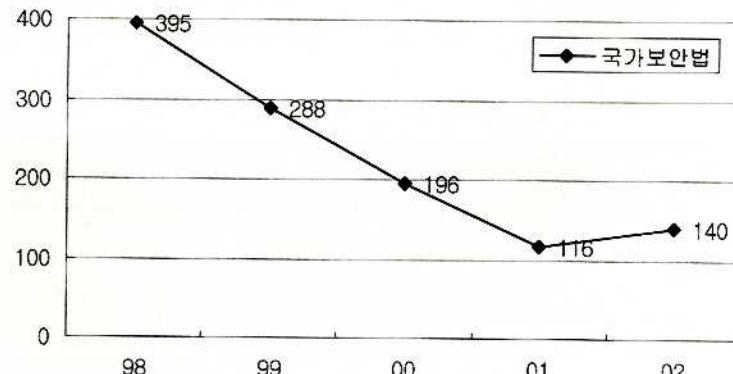
■ 1996년 분류(1. 1 ~ 9. 16 현재)

구분	계	반국가·이적단체 구성가입 등	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및 친양·고무 등	회합·통신 등
계	360	209	145	6
구속	307	180(58.6%)	121(39.4%)	6
불구속	38	20	18	
이첩	15	9	6	

▶ 김대중 정부

■ 제1심형사공판사건누년비교-접수(국가보안법 기소인원)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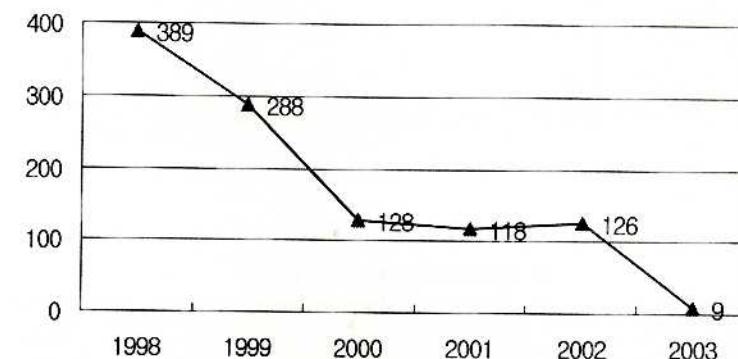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구속인원	395	288	196	116	140



10)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8년~2001년

■ 김대중 정부 5년동안 국가보안법 구속자 연도별 현황¹¹⁾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총
구속인원	389	288	128	118	126	9	1,058

■ 김대중 정부 5년동안 적용조항별 분류¹²⁾

년도별 적용조항별	1998 (2.25~)	1999	2000	2001	2002	2003 (~2.24)	합계
7조(고무·찬양)	354	263	117	106	122	9	971
3조(반국가단체)	15	0	5	1	1		22
6조(잠입탈출)	5	10	1	7			23
8조(회합통신)	9	10	3	4	2		28
4조(국가기밀)	2	5	1	.			8
9조(편의제공)	4		1		1		6
10조(불고지죄)							
계	389	288	128	118	126	9	1,058

11) 민가협 조사통계,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 1998.2.25~2003.2.24. 통계임.

12) 민가협 조사통계,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 1998.2.25~2003.2.24. 통계임.

10조(불고지죄)						
9조(편의제공)	6					
4조(국가기밀)	8					
8조(회합통신)	28					
6조(잠입탈출)	23					
3조(반국가단체)	22					
7조(고무/찬양)					971	

■ 김대중 정부 5년동안 신분별 현황

연도 작업	1998년 (2.25~)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24)	합 계
학생	295	227	104	91	114	8	839
노동자	18	1	2	10			31
재야	63	46	16	15	9	1	150
군인	13	14	6	2	3		38
계	389	288	128	118	126	9	1,058

■ 한총련 대의원 구속자 비율¹³⁾

구분	연도	1998 (2.25~12.31.)	1999	2000	2001	2002	2003 (~2.24)	합계
국가보안법 위반 총 구속인원(명)		389	288	128	118	126	9	1,058
한총련 대의원 구속 인원(명)		170	157	71	72	90	7	567
비율(%)		43.7%	54.5%	55.5%	61%	71.4%	77.8%	53.6%

13) 민가협 조사통계, 구속 당시 적용된 법조항 기준, 1998.2.25.-2003.2.24. 통계임.

■ 한총련 관련 구속 및 기소현황¹⁴⁾

연도	구분	구속인원	기소	불기소	수사중
1997		191	191		
1998		127	121	6	
1999		162	149	13	
2000		101	95	6	
2001(1월~8월)		13	4		9
계		594	560	25	9

■ 한총련 관련 검거 및 사법처리현황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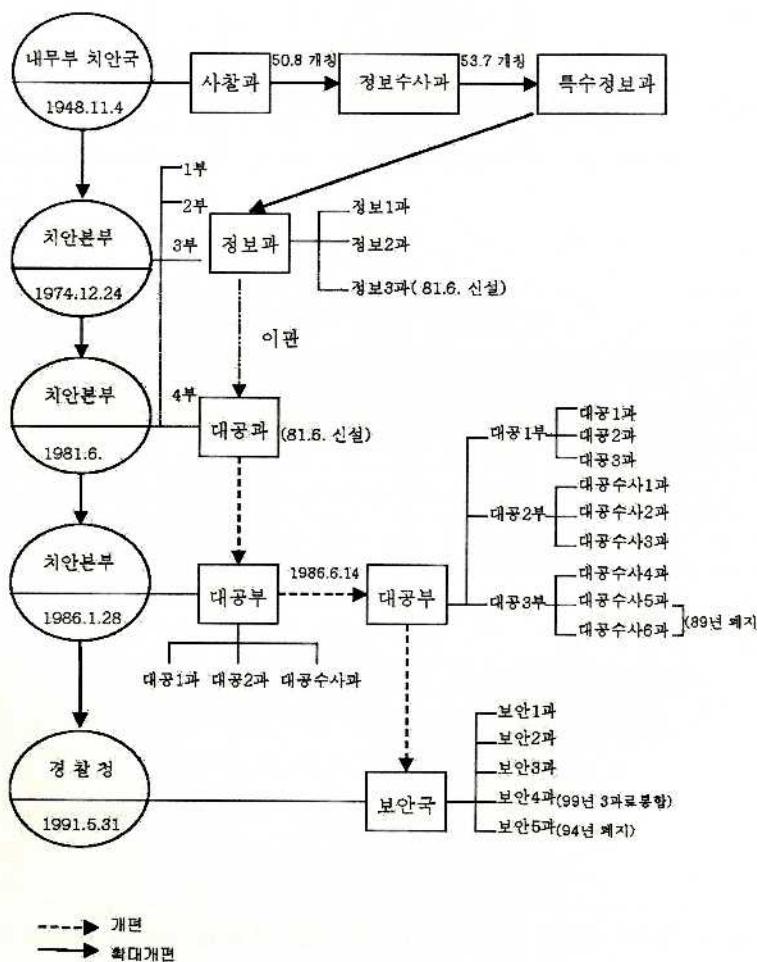
구분 기준	사법처리 대상자	검거자 처리현황(796)			사법처리현황(774)			미검자	
		계	구속	불구속	내사종결	계	구공판		
97.1.~12.(제5기)	388	366	206	160		366	351	15	22
98.1.~12.(제6기)	301	269	145	118	6	263	252	11	32
99.1.~8.(제7기)	291	161	97	48	16	145	137	8	130
계	980	796	448	326	22	774	740	34	184

14) 법무부, 2001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법제시법위). 연도 기준일자는 '당해연도 사법처리 척수 시점부터 다음해 사법처리 척수시점 전까지'이다.

15) 1999년 법제시법위원회 국정감사자료

2. 국가보안법 적용기관 관련 기구표

경찰 보안(대공) 업무분장 변화 흐름도

■ 전국보안수사대 현황¹⁶⁾

계	본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44	6	3	3	3	3	1	3	3	1	4	3	4	3	3	1

■ 보안수사대가 구속 수사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현황¹⁷⁾

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02.8.31	계
국가보안법위반전체 구속인원(명)	113	338	243	459	663	454	302	123	116	80	2,891명
보안수사대 구속인원(명)	92	305	218	411	525	350	237	90	83	44	2,355명
비율(%)	81.4	90.2	89.7	89.5	79.2	77.1	78.5	73.2	71.6	55	81.5%

■ 전국 경찰공무원 중 보안분야 인력변동 현황¹⁸⁾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원(정원)	5,268	4,598	4,485	4,278	4,417	4,188	3,853	3,346	3,118	3,101

■ 경찰인력현황(분야별)¹⁹⁾

구분	계	경무	방범	수사	교통	경비	정보	보안	외사	통신	파출소
인원(명)	90,555	4,409	4,786	14,795	6,951	7,545	3,992	4,200	896	1,278	41,222

16) 경찰청, 2002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17) 경찰청, 2002 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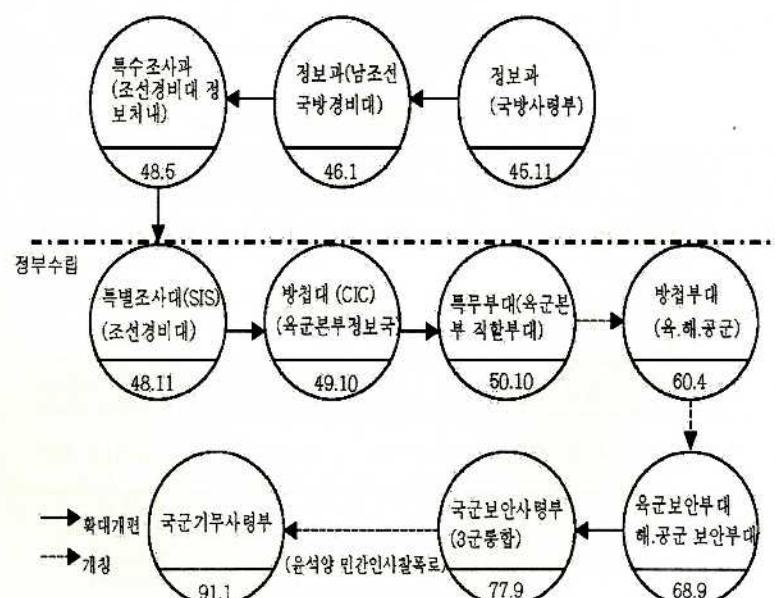
18) 2002년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자료 중에서. 이 자료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2002년은 8월 31일 현재. 위 인력은 정원을 기준으로 함.

19) 경찰청, 1998년 행자위 국정감사 제출자료

■ 경찰의 공적별 특진내역²⁰⁾

연도/내역	계	범인 검거	직무 탁월	청용 봉사상	보안사범 검거	경호 경비	한총련 수배자 검거	간첩 검거	정보활 동 유공	노동법 반대 수배자 검거	기소 중지자 검거	기타
1997년	823	408	57	4	29	7	238	2	21	2	5	50
1998년 9.3.현재	204	77	10	5	12	19	51	1	1			28

■ 기무사 변천 연혁



20) 경찰청, <1997년, 1998년 경찰 특진내역>, 1998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 제출 자료

■ 국가정보원 변천과정

분류	중앙정보부 ⇒	국가안전기획부 ⇒	국가정보원
구성시기	국가재건최고회의(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국가보위입법위원회(5.17군 사쿠데타 직후)	국민의정부 출범이후(99.1.22)
근거법령	중앙정보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정보원법
비고	1962년 대통령직속기구로 개편	*1993년 12월 국가보안법 7조, 10조 수사권 폐지 *1996년 12월 수사권 부활 *관계기관대책회의 등 주관	

■ 80년대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불법구금 사례²¹⁾

이름	연행일자	구속영장발부일자	불법구금기간	구금장소
신귀영	1980. 2. 25.	1980. 5. 3.	68일	부산시경 대공분실
석달윤	1980. 8. 21.	1980. 10. 6.	47일	중앙정보부(현 안기부)
박동운	1981. 3. 7.	1981. 5. 8.	63일	국가안전기획부
나진	1981. 3. 26.	1981. 6. 22.	89일	서울시경 옥인동 분실
송기복	1982. 3. 2	1982. 6. 26.	117일	국가안전기획부
함주명	1983. 2. 18.	1983. 4. 4.	46일	차안본부 남영동 분실
양동화	1985. 6. 2	1985. 8. 5.	65일	국가안전기획부
황대권	1985. 6. 4.	1985. 8. 5.	63일	국가안전기획부
김성만	1985. 6. 6.	1985. 8. 5.	61일	국가안전기획부
김양기	1986. 2. 21.	1986. 4. 5.	44일	보안사 광주분실

21) 민주화실천기족운동협의회 조사

▶ 검찰 및 공안합동수사본부 관련

■ 검찰청 사무기구 개편내용

개편일시	개편근거	개 편 내 용
1973.1.25	대통령령 제6472호	◦ 대검찰청 공안부 신설·공안·강력 및 선거 사건 지휘감독
1975.7.16	대통령령 제7698호	◦ 서울지검 공안부에 공안사무과 신설 ◦ 대검 공안부 공안사무과의 분장사무로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1980.5.31	대통령령 제9895호	◦ 대검 공안부 공안사무과의 분장사무로 노동사건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추가
1981.4.24	대통령령 제10296호	◦ 대검공안부에 공안자료과를 신설 ◦ 부산지검 특별수사 제1부를 공안부로 개편, 그 밑에 공안사무과를 신설
1984.6.30	대통령령 제11457호	◦ 대검공안사무과를 공안제1과로, 공안자료과를 공안제2과로 개편
1986.4.30	대통령령 제11880호	◦ 서울지검 공안부에 공안 제1, 2부로 하고 공안제1부에 공안사무과 신설
1986.10.11	대통령령 제1190호	◦ 대검찰청 공안부에 공안제3, 4과 및 공안기획담당관 신설 ◦ 대검공안부(공안제3과) 분장사무로 학원관련 사건에 관한 사무의 지휘·감독 사항 추가 ◦ 서울지검 공안사무과를 공안제1과로 하고 공안제2부에 공안제2과를 신설 ◦ 부산지검 공안사무과를 공안과로 하고 인천, 수원, 대구, 광주지검 및 서울지검 동부, 남부, 북부지청 특별수사부에 공안부를 각각 신설
1998.2.28	대통령령 제15712호	◦ 대검 공안부의 공안4과 삭제

■ 합동수사본부 변천과정

분 류	설립시기	주도체력	본부장	구성기관	부설기구	비 고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10.26.직후	보안사	보안사령관	보안사 중앙정보부 검찰 치안본부		
관계기관 대책회의	5공시절	안기부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등		
공안 합동수사본부	1989년 3월20일	안기부	대검 공안부장	안기부 보안사 검찰 경찰 문교부 노동부	공안합동정책협의회	
한총련좌의사법 합동수사본부	1996년 9월2일	검찰	대검 공안부장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 기무사	각지검에 지역 합수부 설치, 실무협의회	97년 4월까지 총 12회 개최, 한총련 370명 구속
좌의사법 합동수사본부	1997년 5월7일	검찰	대검 공안부장	검찰 안기부 경찰 교육부 기무사 노동부 문화체육부 공보처	대책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97년 8월 31일까지 한총련 판련 795명 구속
공안사법 합동수사본부	1998년 3월18일	검찰	대검 공안부장			
공안대책 협의회	1999년 3월12일 ~현재	검찰	대검 공안부장		중앙기구, 실무 협의회, 지역협의회	법제화

▶ 공안문제연구소 관련

■ 공안문제연구소의 기능²²⁾

주 요 기 능		구분
· 좌의이념 및 이론에 대한 비판이론의 체계적 연구와 대응론 개발	10%	
· 국내외 좌의세력의 실상과 전술 등 실태 파악 및 문제점 도출	10%	
· 좌의관련 대안개발, 정책방향 제시 및 자문	10%	
· 공안관련 사건에 관한 문건 감정 및 분석	60%	
· 기타 유관 안보기관 이념계도 지원(강의)	10%	

■ 공안문제연구소 이적표현물 감정실적²³⁾

구 분	계	도 서	간행물	유인물	기 타
계	14,097	752	3,524	9,780	41
'98	6,540	568	1,012	4,934	26
'99.8.31 현재	7,557	184	2,512	4,846	15

· 예 시 반정부적 성향의 유인물 “<다함께> 반전 특별호”

표 현 물	감 정 결 과
“미국은 이번 탄저병 테러의 핵심 용의자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대량살상의 최대위협은 생화학 무기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다. 위 심턴 타임지에 기고된 한 과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만이 무기 생산용 분말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다함께> 반전 특별2호 “부시는 민간인을 죽이고 있다”	“미국내 탄저병 발생을 미국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소동을 벌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방하는 내용”; 이 유인물은 “이념적 측 면에서 주장은 없으나 반정부적 성향의 표현물로 판단됨” (2001.10.26. 공안문제연구소)

22) 대우경제연구,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공동, 「중앙행정기관경영진단」, 1999.

<http://university.seoul.go.kr/down/T021/End.hwp>

23) 1999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 감사 자료

· 예 시 좌익성의 유인물

표 현 물	감 정 결 과
<p>“저는 사상을 표현하고 행동에 옮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스스로 인권대통령을 자처하는 것은 너무나 위선적입니다.”, “봉건제가 그랬듯이 자본주의도 영원불변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에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인류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거추장스럽고 낡은 껌질을 벗어 던지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사회를 통제하고 운영하는 더 발전된 체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p> <p><전지윤씨 최후진술문></p>	<p>“현 자본주의 체제를 전쟁과 불평등 및 대량살업을 낳는 체제라 비방하며 자본주의 타파와 더욱 발전된 체제건설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결국 현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지향을 고무선전하는 것.... 좌익성이 있다” (2002.4.3. 공안문제연구소)</p>

· 예 시 용공성향의 문건 1 “대자보 문안”

표 현 물	감 정 결 과
	<p>“노동자 민중은 ‘고통분담’도, 정리해고를 수반하는 ‘구조조정’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 무능한 선장(김대중)은 선원(노동자민중)의 30%를 바다에 빠뜨려야 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배가 파산하게 된 것은 무능한 선장과 부패한 승객(재벌, 관료)들 때문이다”, “이 배의 통제권을 빼앗아 이 배를 선원 전체가 민주적으로 통제하게 될 때 이 배는 파산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경제위기-고통분담에 대한 대자보문안, 전지윤씨 사건 유인물></p>

· 예시 용공성향의 문건 2 “한청 사업방향”

표 현 물	감 정 결 과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통해 획기적인 민족대단결의 사회정치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전민족적인 환영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을 각계각층과 연대하여 힘있게 조직한다 (답방 환영위원회 구성 등) ”<한청 1기 사업방향 수정(안), 한청(준) 창립준비 소위, 한청 PC통신 개시판(2001.2.8.)>	“김정일의 답방 환영분위기 조성 사업을 위해 답방 환영 위원회 구성 등의 사업계획은 김정일 답방활동을 찬양하고 있으므로 본 문건은 용공성향으로 판단됨” (2002.2.26. 공안 문제연구소)

· 예시 친북용공 유인물 “대구경북연합 강령 전문”

표 현 물	감 정 결 과
“갑오농민전쟁의 봉화가 오른 이후 우리 민중은 백년에 걸친 장구한 세월을 민족해방과 민주주의를 위해 외세와 독재에 맞서 싸워왔다. 3·1운동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이르기까지 조국해방을 향한 민족의 의지는 강인하게 분출되었고 일제 패망과 조국분단 이후 통일을 향한 장엄한 투쟁행렬은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4월혁명에서 부마항쟁으로 광주민중항쟁에서 6월의 떠약볕 아래 약동했던 전국적 민주화대투쟁으로 우리 역사는 대중투쟁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이어왔으며 7·8월 노동자 대투쟁 속에서 민중의 영웅적 신화는 재현되었다.”<대구 경북연합 강령 전문>	“주사파 주동단체인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산하 대구 경북지역조직의 강령규약으로서 우리나라의 현대사를 북한식 민중사관의 견지에서 분석, 김일성의 항일 무장투쟁 전통 계승운운하며 외세배격과 민족자주, 사회변혁과 민주정부 수립을 표방하며 반체제 연복 통일 투쟁을 결의 선동하는 친북 용공 유인물” (2000.1.13. 공안문제연구소)

3. 국가보안법 사건 재판 관련 통계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검거 및 처리현황²⁴⁾

년도별	92	93	94	95	%	97	98	99	2000	2001 ~6.30)
계	276	213	467	286	534	877	688	509	237	99
구속	192	113	338	243	459	663	454	302	123	66
불구속	84	100	129	43	75	214	234	207	114	33
불구속 비율	30.4%	46.9%	27.6%	15%	14%	24.4%	34%	40.6%	48.1%	33.4%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현황²⁵⁾

구분	구속영장 청구건수	구속영장 발부건수	판사기각 건 수	기각율 (%)
1997년	670	663	7	1.04
1998년	472	454	18	3.81
1999년	313	301	12	3.83
2000년 (~8.31.)	96	92	4	4.17

24) 2001년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자료

25) 경찰청 자료, 2000년 국정감사 행정자치위 제출. 2000년은 8월 31일까지의 통계이다.

■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입건자수 및 구속자수 등 현황²⁶⁾

구분 연도	입건자수	구 속 자				
		구속인원	기소율	불 기 소 현 황		
				계	기소유예	기타
1997	946	641	96%	25	24	1
1998	785	465	96.1%	18	17	1
1999	506	312	91.9%	25	23	2
2000	286	130	95.4%	6	5	1
2001	247	126	95.2%	6	6	0
2002(1~8)	151	92	98.9%	1	1	0

■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집행유예율²⁷⁾

구분 연도별	자유형	집행유예	기타	계	집행유예율
1992	138	162	17	317	51.1%
1993	92	120	8	220	54.5%
1994	93	217	7	317	68.5%
1995	59	146	7	212	68.9%
1996	98	176	53	327	53.8%
1997	179	324	49	552	58.7%
1998	80	239	61	380	72.5%
1999	43	224	42	309	72.5%
2000	31	114	44	189	60.3%
2001	25	92	9	126	73%

26) 검찰청 제출자료, 2002년 국정감사(법제사법위원회) 제출자료, 단위 : 명

27) 법원 자료, 2001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 제출

■ 국가보안법 위반 재판결과 현황²⁸⁾

구분	년도	1996	1997	1998	1999	2000 (1~6)
구속인원	465	641	465	312	61	
재판	실형 (실형율)	95 (21.7%)	88 (14.3%)	40 (9%)	10 (3.5%)	
	집행유예 (비율)	325 (74.2%)	494 (80.2%)	356 (79.8%)	231 (80.5%)	30 (53.6%)
	선고유예 (비율)	14 (3.2%)	16 (2.6%)	6 (1.3%)	1 (0.3%)	

■ 국가보안법 관련 구속기소자 보석현황²⁹⁾

연도	구분	구속기소	보석	보석율
1997		611	53	8.7%
1998		441	45	10.2
1999		286	34	11.9
2000		118	18	15.3
2001(~8말)		74	12	16.2

28) 법원 자료, 2000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 제출

29) 2001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 자료

■ 제1심 형사공판 전체사건과 국가보안법사건 처리 인원비율 비교³⁰⁾ (단위 : %)

연 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사형 선고율	전체	0.04	0.05	0.03	0.02	0.03	0.03	0.03	0.01	0.02	0.02
	국보	3.54	5.95	5.78	1.08	4.49	8.99	3.60	2.44	-	2.44
	반공	-	4.80	0.20	0.62	0.44	-	-	0.70	-	0.94
무기 선고율	전체	0.05	0.05	0.06	0.04	0.06	0.05	0.05	0.06	0.07	0.07
	국보	2.02	2.02	5.41	2.67	4.32	4.49	2.16	2.44	-	4.88
	반공	-	-	0.60	0.62	0.88	0.29	-	1.05	-	1.41
무죄 선고율	전체	0.88	0.62	0.51	0.55	0.42	0.32	0.39	0.48	0.50	0.46
	국보	5.05	0.54	-	2.16	1.28	1.12	-	-	3.03	-
	반공	7.96	7.01	0.99	2.18	2.64	2.06	1.24	0.35	0.43	0.47
집유 선고율	전체	-	-	-	-	-	43.25	43.23	42.97	43.39	44.03
	국보	40.90	32.97	30.22	24.32	12.82	19.10	12.23	31.71	12.12	9.76
	반공	37.24	40.22	47.42	42.68	31.28	26.55	22.83	26.92	22.84	25.35

■ 제1심 형사공판사건의 사형·무기·무죄·집행유예 선고율³¹⁾(단위 : %)

연 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사형 선고율	전체	0.03	0.03	0.03	0.02	0.02	0.01	0.02	0.01	-
	국보	-	0.10	2.33	3.31	0.82	0.97	0.40	-	-
	반공	2.14	-	-	-	-	-	-	-	-
무기 선고율	전체	0.06	0.07	0.08	0.08	0.10	0.10	0.08	0.07	0.06
	국보	3.92	0.51	3.26	2.48	3.28	4.85	1.62	-	0.43
	반공	1.43	-	3.03	-	-	50.00	14.29	-	-
무죄 선고율	전체	0.49	0.53	0.52	0.51	0.49	0.44	0.40	0.42	0.40
	국보	-	-	0.93	-	-	5.83	-	-	-
	반공	-	-	-	-	-	-	-	-	-
집유 선고율	전체	44.13	41.71	41.16	41.28	40.23	40.38	41.67	44.24	46.40
	국보	15.69	32.97	30.22	24.32	12.82	19.10	12.23	31.71	70.51
	반공	26.43	1.86	6.06	-	33.33	-	14.29	-	-

30) 1970~1979년 「사법연감」에서 발췌

31)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70~1979년에서 발췌

■ 제1심 형사공판사건 사형선고 인원수³²⁾

연 도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전 체
전 체	전체	26	25	37	45	39	24	27	33	32	14	17	18	32	33	35	19	18	25	8	18	15	17	36	593
국 보	국보	10	10	7	11	13	2	7	8	5	1	-	1	2	1	6	4	1	1	1	-	1	1	93	
반 공	반공	-	5	-	13	1	2	1	-	-	2	-	2	3	-	1	-	-	-	-	-	-	-	29	

■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기징역(금고) 선고 인원수³³⁾

연 도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전 체	전체	42	44	73	47	64	62	65	60	68	60	59	68	90	83	105	104
국 보	국보	4	10	13	8	7	4	3	1	-	2	2	5	7	3	4	5
반 공	반공	-	-	3	2	2	1	-	3	-	3	2	-	1	-	-	1

■ 제1심 형사공판사건 무기형(징역·금고) 선고 인원수³⁴⁾

연도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9	00	01
전체		88	81	65	70	150	121	91	109	76	82	113	105	133	117	105
국보		4	-	1	-	-	1	1	4	-	-	-	-	-	-	-
반공		1	-	-	-	-	-	-	-	-	-	-	-	-	-	-

32)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69~1991년. 단위 : 명

33) 내무부, <국정감사 보고자료>, 1988.10. 684쪽

34)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86~2002년

■ 1990년 이후 대법원 판례상 반국가 단체³⁵⁾

연번	단체명	판결	비고
1	한국민주통일연합(한통련)	대판 90도 1333 90. 9.11	해외단체
2	자주민주통일그룹(자민통)	대판 91도 2341 91.11.22	국내단체
3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대판 92도 256 92. 4.24	국내단체
4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대판 93도 2158 93. 7.26	국내단체
5	1995년 위원회 (후에 '애국동맹'으로 명칭변경)	대판 93도 2209 93.11. 9	국내단체
6	구국전위	대판 95도 1148 95. 7.25	국내단체

■ 이적단체 구성 · 가입과 관련한 구속 또는 불구속 현황³⁶⁾

구속·불구속 현황				연도별 검거현황								
계	구속	불구속	이첩	'91	'92	'93	'94	'95	'96	'97	'98	
2,001	1,531	405	65	92	137	44	185	183	344	612	404	

※ 1990년 이후 이적단체 조항이 적용된 사건³⁷⁾

1990년 노동계급,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마산 일꾼노동상담소, 인천 노동자대학,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혁명적노동자계급투쟁동맹, 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이상 노동운

35) 경찰청, 1998년 국정감사 제출자료(행정자치위원회)

36) 경찰청, 1998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제출자료

37) 이적단체 사건 가운데는 수차례에 걸쳐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국제사회주의자들 사건, 한총련 사건, 각 자주대오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고 그외에도 수년간에 걸쳐 조직원들이 체포, 구속된 사건이 많았다. 여기서는 첫 사건 발생시점을 중심으로 정리한다.

동 관련 조직사건) 조국통일촉진그룹, 전국민주주의학생연맹 등(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

1991년 청주대 자주대오, 서울대 민족해방활동가조직, 안동대 반미애국학생회, 동국대 민주주의 학생연맹, 마창지역 민주주의학생연맹, 민주주의학생연맹, 민학투련, 상지대 민주주의학생 연맹, 부산민주주의학생연맹, 서울지역대학생노동자예술인연합(이상 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 부산민족민주운동연합, 성남노동자투쟁위, 서울민족민중미술운동연합, 민주주의노동투쟁 동맹, 반제반파소민중민주주의혁명그룹, 서울사회과학연구소(노동운동 및 사회운동 단체)

1992년 인양지역자주학생운동연합, 남한사회주의학생연맹, 청주대 민주학생투쟁연맹, 민족한남 대활동기조직(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 인천지역노동자그룹,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 안산민중 민주주의노동자투쟁동맹, 노동자계급해방투쟁위원회, 노동자대학, 노동자문화일터, 노동자정치활동센터, 한국노동당, 한국사회주의노동당,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 일동그룹(이상 노동운동 관련 조직사건)

1993년 국제공산주의지당,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그룹, 남한사회주의과학원(반국가단체 기소, 이적단체 판결), 민중정치연합 원주지부 · 광주지부

1994년 제주대 새오름, 김일성주의청년동맹, 청소년단체 셈, 평화실현학생연맹, 원광대 단기학생 동맹(이상 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노해투사, 노동자민족문화운동연합, 성남지역노동자회, 한누리노동청년회, 일심단결회, 포항민주청년회, 우리청년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이상 노동 · 재야운동 관련 조직사건)

1995년 새오름, 8·28학생동맹, 반미불패, 경기대 자주대오 활동가조직, 부산대자주대오, 우석대 자주대오, 원광대 구국자주대오, 충남대 활동가조직, 빛나는 전망, 성균관대 민민학련, 민족시랑학생연합, 학생사회주의기간대오, (학생운동조직사건) 남한프롤레타리아계급투쟁동맹, 전국노동자운동협의회,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그룹, 범민련(노동, 통일운동관련 조직사건)

1996년 애국청년선봉대, 천리마노래단, 경상대 활동가조직, 남총련 민족해방군, 남총련 자주대오, 부산외대 자주대오, 상지대 활동가조직, 제주대 활동가조직, 강원대 자주대오, 21세기진보 학생연합, 노나매기, 사회주의학생연합, 전국학생청치연합(전학련), 전주대 단기학생동맹,

전국민족민주학생연합(이상 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 한국노동청년연대, 해방노동지통일 전선, 함께하는 노동청년회, 공산주의연합,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애국크리스챤청년연합(이상 노동·재야단체)

1997년 단국대(천안)자주대오, 동아대 자주대오, 연세(원주)대 자주대오, 인천교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전북대 혁신대오, 외국어대(용인)주시연구회, 고려대 '청년', 전국농업계대학생대표자 협의회, 전국학생연대, 커문주의지하혁명활동가그룹, 부산지역 학생연대, 서울대 학생연대, 전국학생정치연합, 상지대 21세기프로메테우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상 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 노동정치연대, 부천민주노동청년회, 북부노동자회, 사회민주주의청년연맹, 전국노동자운동단체협의회, 참세상을 여는 노동자 연대, 한국노동청년연대(이상 노동·재야 운동 관련 조직사건)

1998년 관악노동청년회, 안양민주화운동청년연합, 진보민중청년단체연합,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족사랑청년노동자회(이상 청년·노동운동 관련 조직사건). 항공대 학생연대, 인제대 활동가 조직, 울산대 혁신대오, 단국대(천안) 신자주대오(이상 학생운동)

1999년 서울진보청년회, 안양사랑청년회(청년운동 관련 조직사건) 원광대자주대오 사건, 과기대 자주대오, 동서대 자주대오, 반미구국한양, 광운대 자주대오(이상 학생운동 관련 조직사건)

2000년 한신대 활동가조직 사건, 국제사회주의자들 그룹사건

2001년 단국대 활동가조직사건,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 진보의련 사건

2002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사건, 범청학련(후원회) 사건

■ 국가보안법 등 위반 장기수의 복역 연수

이름	체포일	출소일	복역연수	이름	체포일	출소일	복역연수
김선명	1951. 10.15.	1995. 8.15.	43년10개월	최수일	1965. 3. 5.	1999. 2.25.	33년11개월
안학섭	1953. 3.	1995. 8.15.	42년 5개월	리경찬	1965.11.12.	1999. 2.25.	33년 3개월
이종환	1951. 10.	1993. 3. 6.	41년 5개월	왕영안	1958.	1991. 5.25.	33년
우용각	1958. 7.12.	1999. 2.25.	40년 7개월	김동기	1966. 5.18.	1999. 2.25.	32년 9개월
김우택	1952. 2.25.	1991. 2.25.	39년	장 호	1958. 7.25.	1991. 2.25.	32년 7개월
윤용기	1959. 7. 3.	1998. 3.13.	38년 8개월	임병호	1959. 9.27.	1991.12.24.	32년 3개월
한장호	1957.11.20.	1995. 8.15.	37년 9개월	박완규	1967. 9. 9.	1999. 2.25.	31년 5개월
방재순	1953. 8.	1991. 2.25.	37년 6개월	이공순	1967.12.10.	1999. 2.25.	31년 2개월
장병락	1962. 4. 4.	1999. 2.25.	36년10개월	박봉현	1960. 2.19.	1991. 2.25.	31년
홍명기	1962. 4.22.	1999. 2.25.	36년10개월	신인영	1967. 3. 9.	1998. 3.13.	31년
이경구	1952. 11.7.	1989. 6. 9.	36년 7개월	홍경선	1967. 9.17.	1998. 3.13.	30년 6개월
안영기	1962. 8.12.	1999. 2.25.	36년 6개월	윤수갑	1967. 9.	1998. 3.13.	30년 6개월
최선록	1962. 8.12.	1999. 2.25.	36년 6개월	김종호	1961. 5.25.	1991. 5.25.	30년
류한욱	1955.	1991. 2.25.	36년	김익진	1969. 6.10.	1999. 2.25.	29년 8개월
최하종	1962. 3. 5.	1998. 3.13.	36년	김창원	1969. 6.12.	1999. 2.25.	29년 8개월
홍문거	1957. 5.20.	1993. 3. 6.	35년10개월	양정호	1969. 6.16.	1999. 2.25.	29년 8개월
양희철	1963. 4.24.	1999. 2.25.	35년10개월	오형식	1969. 6. 5.	1999. 2.25.	29년 8개월
김명수	1957. 7.28.	1993. 3. 6.	35년 8개월	이제룡	1970. 6.19.	1999. 2.25.	29년 8개월
허영철	1955. 7.	1991. 2.25.	35년 7개월	김은환	1969. 9. 8.	1999. 2.25.	29년 5개월
김인수	1962. 8. 9.	1998. 3.13.	35년 7개월				

**학문·예술·언론·표현의 자유 관련 대표적 적용사례
(1980년 이후)**

사건발생일	사건내용
1981.9.2	박영창의 무협소설 「무림파천황」의 일부가 사회주의를 표방했다고 국가보안법 적용 구속
1986.10.17	대정부 질의서 "국시는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적용구속된 유성환 의원 사건
1986.11.22	술에 취해 버스안에서 "나는 공산당이다 잡아넣어라"고 발언
1986.11.29	술에 취해 디방안에서 "나는 빨갱이다 이북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발언
1986.5	서노련신문의 네킨만화 <깡순이>의 작가 이은홍씨 서울노동운동연합 사건으로 구속
1986.5.30	술 먹고 노상에 누워 김대중 만세, 김일성 만세 3차례, 김정일 만세 2차례
1987.11.	북한방문기 <분단을 뛰어넘어> 책자의 일부를 대자보에 게재했다고 부산대학생 구속
1987.11.11	제주 4·3형장을 딴 시 <한라산>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시인 이산하 구속
1987.12.	KAL기 폭파사건에 의문을 제기한 대자보 게재했다고 서울대 박창용 등 대학생 디수 구속
1988.12.	학보에 루이제린저의 방북기 <주체사상의 나라 북한에 가다> 서평을 쓴 부산여대생 안상연 구속

- 1988.6.14 서관모 교수 <중간 계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위치> 논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소환장 발부
- 1989.12.1 일제시대 만주지역 항일운동사 딴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된 이재희 「한국근현대민족해방운동사」
- 1989.4.12 방북취재 계획이 탈출 예비음모죄에 해당한다며 리영희 [한겨레신문]는 설고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 1989.5. 주체사상 관련 글을 실었다는 이유로 국민대, 세종대, 전북대 교지등에 국가보안법 적용, 편집장 등 구속
- 1989.7.12 발표하기전 집필중이던 공동창작 작품 <어머니의 길>을 문제삼아 문학평론가 백진기등 6명 구속
- 1989.7.15 황석영의 북한기행문 「사람이 살고 있었네」 게재했다고 청비 이시영 주간 구속
- 1989.7.2. 서경원 전 의원 밀입북을 사전 인터뷰를 통해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겨레신문> 윤재걸 기자 불고지죄로 구속영장 청구
- 1989.7.31 평양축전에 보낸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관련으로 홍성담씨 등 화가 5명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 1989.7.4. 신학철 그림 <모내기>로 부채를 제작했다고 이상욱씨 구속(무죄판결)
- 1989.8.17 신학철 화백의 그림 <모내기>가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
- 1989.9. 시집 「지리산」 이 빨치산을 미화했다고 저자 이기형과 출판인 정동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 1990.1.17. 사회구성체논쟁에서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주창한 이진경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 1990.10.10 고려대 연세대에서 북한영화 <소금>, <탈출기> 상영시도했다고 총학생회장 등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사전영장 발부
- 1990.12.7 몽고 취재중 북한대사 인터뷰 한 KBS PD 2명 국가보안법 입건
- 1990.2.21 한국현대사를 담은 서사시 「붉은 산 검은 피」 가 북한을 찬양고무했다고 시인 오봉옥과 송기원 실천문학 주간 구속
- 1990.7.12 제주 4.3 사건 자료집 만든 '아리리연구원' 이적표현물 제작죄로 구속기소
- 1991.6.28 서울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논문에 대해 이적표현물 적용 하여 연구원 4명 구속
- 1993.11.18 컴퓨터 통신에 사노맹 등의 입장을 실었다고 천리안 현대철학동호회 회장 김형렬씨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1994. 내외통신에서 보도한 <김일성 신년사>를 천리안의 희망터 게시판에 올린 이창렬씨 구속
- 1994.2.21 노래패 <희망사>의 노래극 대본 <아침은 빛나라>이 이적표현을 해당한다며 기수 등 6명 구속
- 1994.3.15 천리안 전자게시판에 <공산당선언> 올린 네이즌 진상호씨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법원에서 무죄판결)
- 1994.3.9 인터넷상 토론을 돋고자 아너키스트 등 관련 글을 올린 통신인 김영선씨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 1994.3.19 <강의 노동자의 철학> 등 이적표현을 폐냈다고 일빛 출판사 대표 구속
- 1994.3.23 <사랑과 통일의 실천철학> 등 이적표현을 폐냈다고 힘 출판사 대표 구속
- 1994.4.20 북한소설 <용해공들> 폐냈다고 도서출판 <일타> 대표 등 구속

- 1994.4. 조정래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이승만 정부를 친미괴뢰로, 여순사건을 미화했다고 작기를 불구하고 속입건
- 1994.6.10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 이적표현물 출판혐의로 백산서당 대표 구속
- 1994.7.18 김일성 주석 시망 조의 표시 현수막, 북한을 동조한 것이라며 서울시립대 부총학생회장 등 구속
- 1994.7.20 한국전쟁에 대한 북한 입장 담은 내용을 평불협 회보 <하나로>에 실은 것이 북한을 찬양 고무한 것이라며 범타 스님 구속
- 1994.7.27 진주경상대 교양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가 이적표현물이라며 2명의 현직교수 기소
- 1995.3.12 비전향장기수 장례의식 문제삼아 장례위원장 국기보안법상 동조죄로 구속
- 1995.3.23 <빨치산 역사기행> 자료집 만든 방송대 강사 김무옹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 1996.10.1 경인총련 노래패 <천리마>가 이적단체에 해당한다며 노래패 단원 10명 구속(법원에서 무죄판결)
- 1996.10.16 무장공비 관련 독자의견을 학보에 실은 동국대 학보 편집장 국보법 위반 구속
- 1996.10.31 컴퓨터 통신 게시판에 무장공비사건에 대한 의견을 올린 것이 북한을 찬양한 것이라며 윤석진씨 구속
- 1996.2.3 노래책 <희망의 노래> 만들었다고 노래패 꽃다지 대표 이은진 및 출판사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 1996.5.29 나라사랑청년회 기관지 <장산꽃매>,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에 국가보안법 적용

- 1996.6.17 조선대 교지 <민주조선> 편집장 고 이철규 씨 추모 행사중 당시 교지 내용 전시했다고 편집장 등 구속
- 1996.9.26 PC통신에 게시된 무장공비 관련 글 전재했다고 상지대 학보사 기자 등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 1997.2.23 북한학생의 편지 담은 대자보 붙였다고 대학생 6명 구속
- 1997.4.15 <녹슬은 해방구>, <국가와혁명> 등 이적표현물을 판매했다는 혐의로 '그 날이 오면' 등 대학가 사회과학 서점 대표 3인 구속
- 1997.10.27 서청협 기관지 「서울청년」 지에 미군철수 주장 등을 실었다고 서청협 의장 전상봉씨 구속
- 1997.10.29 <자본론> 등 이적표현을 판매 혐의로 논장 등 사회과학서점 대표 4인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 1997.11.25 초등학생용 통일교육교재 「나는야 통일 1세대」 집필한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 직원 이적표현을 제작죄로 구속기소
- 1997.11.26 광주대 박지동 교수의 강의교재 「진실인식과 논술방법」에 이적표현을 적용하여 구속기소
- 1997.12.28 신문, 잡지 등에 실린 다양한 정보를 모아 폐낸 정보잡지 <미래통신>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백성기씨 등 4명 구속
- 1998.2. 제주 4.3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레드헌트> 상영했다고 인권영화제 집행위원장 서준식씨 등 구속기소
- 1998.4.1 북한영화 <꽃피는 처녀> 비디오 테이프 소지했다고 독일유학생 박종대 씨 구속기소
- 1998.4.13 대학 사학과 전공교재로 이용된 책의 일부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한 하영준씨 이적표현을 반포 등 적용 구속

- 1998.11.25 초판 발행이후 2년여 지난 레닌 저서 등 번역서에 대한 이적표현을 적용하여 양효식 풀무질 출판사 전편집장 구속
- 1998.11.25 국립중앙도서관·국회도서관 소장 도서 등에 대한 이적표현물 적용 - 책갈피 출판사
- 1998.4.29 출소장기수들의 증언록 <끝나지 않은 여정>, 북한여성의 생활상 담은 <북한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등을 폐낸 대동출판사 사장 이상관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구속
- 2000.10.24 한총련 출범식 등 동영상제작, 게시한 인터넷 방송 '청춘' 대표 윤여창 씨 등 이적표현물 제작죄 등으로 구속기소
- 2000.11.8 6·15 이후 <김정일의 통일전략> 폐낸 살림터 출판사 송영현씨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 2001.10.23 재일교포에게 '훈글' 내장된 컴팩트 디스켓 보낸 잡지사 기자에게 편의제 공죄 적용
- 2001.10.23 원고청탁하기 위해 연락한 것에 회합·통신죄 적용하여 월간 <자주민보> 이창기 발행인 등 3명 구속
- 2001.11. 빨치산 추모 비문이 북한을 친양, 고무한 것이라며 기세문씨 등 2명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기소
- 2001.11.15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예정작 <탈출기>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는 대검의 입장에 따라 제한상영
- 2001.2.20 2001년도 '노컷전'에 출품예정이던 안성금 회백의 <야! 한반도>가 국가보안법 위반된다고 하여 제한 전시
- 2001.5. 학교 대동제 기간에 한반도, 인공기, 태극기를 함께 내건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구속

- 2001.8.20 작곡가 박종화의 음반 <잡은 손 놓지 말자>가 북한을 고무찬양했다며 작곡가 구속
- 2001.8.21 방북시 '만경대발언'으로 구속했다가 학회논문 <한국전쟁과 민족통일>까지 이적표현물 적용 구속한 강정구 교수 사건
- 2002.3.19 사이버상에서의 대화내용과 다른 사이트에서 복사하여 게시한 글이 이적표현(율)에 해당한다며 네티즌 이재윤씨 구속
- 2002.5.3 수배자 학생 불잡기 위해 인터넷 까페 내사하던 경찰, 까페 운영자를 다른 홈페이지에 실린 글을 복사하여 게시판에 올렸다고 구속
- 2002.5.7 인터넷상의 까페에 올린 조선일보 비판글, 최후진술문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며 성공회대생 전지윤 구속
- 2002.7.25 인터넷에서 주체사상 토론에 실명으로 참가한 김강필 씨 북한을 찬양고무 했다며 구속, 실형선고
2002. 9. 군부대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기소된 현역군인 사건
- 2002.11.1 6.15정상회담 축하 위해 태극기, 인공기, 한반도기를 그린 현수막에 동조죄 적용하여 홍익대생 구속

대표적인 이적표현물 목록

제 목	저(편)자	출판(인)사	검찰 공소번호	법 원 판 결	비고
가족, 시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	F. 엥겔스		86-25712	2심 86노7324	확정
가족의 기원			94-343	2심 94노473	확정
갑오농민 전쟁	박태원	공동체	90-9163	1심 90고단1043	확정
강좌철학	윤영만	세계	89-21121	2심 89노751	확정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	N. 오스트로프스키	온누리	91-4062	2심 92노415	확정
껍데기를 벗고서 1권	백기완, 리영희	사계절	95-6980	1심 95고단514	확정
게오르그 루카치·생애와 사상	조지 리히트하임	한미당 편집부	81-22006	2심 81노3399	확정
경제이론과 사회주의에 대하여	M. 둠		81-49466	2심 82노1718	확정
경제학·철학 수고	K. 막스 /김태경옮김	이론과 실천	81-7652	2심 81노4228	확정
공산당 선언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막스, 엥겔스	백산서당	89-10083	2심 90노1221	확정
국가와 혁명 (State and Revolution)	레닌		90-11583 5	1심 91고합6	확정
그림시의 정치사상	시몬로자외, 김 주환 역	청사	86-23404 2	2심 86노7070	확정
김일성 사상 비판	하수도	백두	89-35976	2심 89노1102	확정

꽃피는 처녀	정동익(북한원전)	아침	89-25347	2심 90노243	확정
노동의 새벽	박노해	해냄	94-343	2심 94노473	확정
노동의 역사	바레 프링스와	광민사	91-14639	2심 91노1754	확정
녹두서평 1	김 남	녹두	91-5908	1심 91고단568	확정
녹슬은 해방구 2,3,4,5	권운상	백산서당	94-1184 1	1심 94고단769	확정
다시 그람시에게로			93-77961	1심 93고합1432	확정
다시 쓰는 한국 현대사 1,2,3	박세길, 임승남	플레계	94-72662	1심 94고합1406	확정
닻은 올랐다(상,하)	북한 소설	힘	90-9973	2심 90노5120	확정
독일 이데올로기	K. 맙스 /하이园林을김	형실	86-25712	2심 86노7324	확정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정 인	거름	91-13387	2심 91노1170	확정
러시아 대 10월 혁명사	소연방과학아카데미 역사연구소		86-39751	2심 87노79	확정
볼셰비키 혁명사	E.H. 카	화다	86-88194	2심 87노2259	확정
러시아 혁명사 1,2,3	소련 과학원	거름	89-38695	2심 89노2352	확정
레닌	루키치외, 김학노 옮김	녹두	86-25712	2심 86노7324	확정
로자 브로크의 사상과 실천	프렐리히 파울로	석탑	93-77961	1심 93고합1432	확정
루드비히 포이에르바하와 독일 고전 철학의 종말	F. 앵겔스		95-29675	1심 95고합401	확정
모순론	모택동		88-38695	2심 88노2352	확정
모순론 해설	松村一人, 지음, 김동춘 옮김	미래사	85-43332	2심 86노755	확정
무림파천황	박영장		81-53135	1심 81고단7397	확정

무엇을 할 것인가 (What is to be? Burning Questions of our Movement)	레닌	백두	93-82986	1심 93고단7375	확정
민중과 지식인	한완상		92-22232	1심 고합82	확정
민중의 바다(북한소설 상,하)	최필승	한미당 편집부	89-16030	2심 89노803	확정
바로보는 우리 역사 제2권	유대기	구로역사 연구소	95-6980	1심 95고단514	확정
빨치산의 딸	정지아	실천문학 사	91-20710	1심 고단2461	확정
북한방문가·분단을 뛰어넘어	김성락외 12	예림기획	87-64668	1심 87고단6431	확정
북한이야기	루이제리저 /김영민 옮김	형성사	89-55130 90-3201	2심 90노241	확정
붉은 바위(소설)	라광빈외 1	일월서각	95-10713	2심 95노857	확정
붉은 산 검은 피(시)	오봉옥	실천문학 사	94-20737	2심 94노3256	확정
브레히트 연구			92-7286	1심 92고합196	확정
사람이 살고 있었네(방북기)	황석영	창작과 비평 89년 겨울	91-5091	대법 92도750	확정
실천론	모택동		85-17035	2심 85노742	확정
실천문학		실천문학 사	94-11841	1심 94고단769	확정
실학파와 정다산	최일한	청년사	90-22402	2심 90노4435	확정
아리랑	님웨일즈	학민사	85-66432	1심 85고합1219	확정
암장	이수병 선생기 님사업회		92-51256	1심 92고단3562	확정

어느 청년노동자의 삶과 죽음	조영래	돌베개	90-52287	1심 90고합838	확정
어머니(소설)	M. 고리끼		67-22391 5	2심 67노402	확정
오직(시)	김지하	사상계 70 년 5월호		대법 74도2080	확정
우상과 이성	리영희 등	한길사	77-65796	2심 78노4236	확정
이성과 혁명	H. 마르쿠제		81-7132	2심 82노3885	확정
일보전진 이보후티	레닌		87-36784	2심 87노6130	확정
자본론 1,2,3	K. 맑스		90-3226	2심 90노995	확정
자본주의 발전연구	M. Dobb	광민사	81-36666	2심 82노1567	확정
자본주의 일반적 위기론과 국가 독점 자본주의론	서관모		91-70927	1심 91고단4953	확정
자유로부터의 도피	E. 프루		81-28033	2심 81노6041	확정
자주고름 입에 물고 옥색치마 휘날리며	백기완	시인사	81-11362	2심 81노306	확정
잠들지 않는 남도	노민영	온누리	89-58286	2심 90노864	확정
전대협 6년사 사진집	한총련		94-96913	1심 94고단7287	확정
전환시대의 논리	리영희	창작파비 평사	94-343	2심 94노473	확정
정치경제학과 자본주의	M. 독	동녘	86-25712	2심 86노7324	확정
제국주의론	레닌	백산서당	91-25335	2심 91노1739	확정
제주민주항쟁 1, II	김명식	오름	92-79333	1심 92고단5329	확정
종군기	김사량	실림티	94-92225	2심 94노5615	확정
주체사상 비판	이진경 역음	벼리	90-41222	1심 90고단3811	확정

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 어	황석영	풀빛	93-10428	1심 93고합421	확정
중국의 붉은 벌	E. 스노우		86-15147	2심 87노3010	확정
찢겨진 산하	정경모	거름	90-18577	2심 90노2748	확정
체 게바라	싱클레어 앤드류 지음				
철학에세이	조성오	동녘	94-4508	1심 94고단292	확정
철학의 빙ゴ	K. 맑스		81-7652	2심 81노4228	확정
청춘송가(북한소설)	남대현	공동체	89-35976	2심 89노1102	확정
針灸臨床取穴圖解	북경중의학원		77-10506	2심 78노3390	확정
칼 마르크스	레닌		86-59003	2심 87노3012	확정
코민테른과 세계혁명 1,2	소련사회과학 아카데미	거름	94-343	2심 94노473	확정
태백산맥 상하	김달수 저, 임 규찬 옮김	연구사	89-35976	2심 89노1102	확정
8억인과의 대화	리영희	창작과 비평사	77-65795	2심 78노4236	확정
폐다교지(Pedagogy)	프레리 파울로	광주	81-49466	2심 82노1718	확정
프랑스혁명사 3부작	K. 맑스		90-3226	2심 90노995	확정
피바다(북한소설)	문학창작단	한마당	94-20737	2심 94노3256	확정
한국근·현대사	강만길	한울	93-10428	1심 93고합421	확정
한국공산주의 운동사 1,2,3	김준엽, 김정순 고대아세 아문제연 구소		94-343	2심 94노473	확정
한국공산주의 운동	서대숙		81-59011	1심 81고단8029	확정

한국공산주의 운동의 기원	이정식, 스칼라 피노	한국연구 도서관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박현채		93-10428	1심 93고합421	확정	
한국노동운동사	김운환	청사	95-10758	2심 95노831	확정	
한국사회의 계급연구	김진균	한울	95-29675	1심 95고합401	미확정	
한국사회의 변혁이론 연구	박태호		91-66009	대법 92도1771	확정	
한일 관계사의 재인식 1	이재오		89-35976	2심 89노1102	확정	
해결 법철학 비판	K. 맥스	백산서당	86-25712	2심 86노7324	확정	
혁명가의 수양	유소기	백산서당	86-25712	2심 86노7324	확정	
현대의 사실주의	G.루카치	백산서당	81-22006	2심 81노3399	확정	
현대 조선말사전(상,하)	북한사회과학 원언어연구소	백의	90-16895	대법 91도453	확정	
해방전후사의 인식	송건호 등	백산서당	93-4901	1심 93고합93	확정	